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구보

제1567호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공 고

○ 공 고 제 2 0 3 1 호 석촌근린공원 조성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공고 ····· 2
○ 공 고 제 2 0 3 9 호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 6
○ 공 고 제 2 0 4 2 호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온라인 구민참여 토론회」 참가자 모집 ····· 52
○ 공 고 제 2 0 6 5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57
○ 공 고 제 2 0 7 3 호 「남동구청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59
○ 공 고 제 2 0 7 4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94
○ 보건소공고제 9 6 호 2020년 음식점 입식좌석개선 지원 사업 모집 재공고 ····· 98
○ 보건소공고제 9 7 호 2020년 음식점 키오스크 도입 지원 사업 모집 재공고 ····· 105

고 시

○ 고 시 제 1 6 0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 111
○ 고 시 제 1 6 2 호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114

회람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031호

석촌근린공원 조성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34호(2020.4.20.)로 사업시행 인가된 석촌근린공원 조성사업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석촌근린공원 조성사업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산15-1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남동구청장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별첨「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10. 15. ~ 2020. 10. 29.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 남동구청 공원녹지과 방문 또는 전화(☏453-6291)
7. 열람서류 : 별첨「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참조
8. 기 타 : 관계서류는 남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석촌근린공원조성사업수용할물건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토지)

(단위:원)

일련번호	수용(사용)할 물건의 표시						수용 재결신청 지연일수	소 유 자			관 계 인	
	동(리)명	지번	지목		면적 (㎡)			지분	성명	공부상 주소 (송달주소)	성명	주소
			공부	실제	공부	편입						
	합계	**6필지**			11,339.00	11,339.00						
1	간석동	5-7	임야	임야	413.0	413.0		1/1	김○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번길 **, 2층 20*호)		
2	간석동	5-7	임야	임야	112.0	112.0		1/1	김○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부용로**번길 **, 2층 20*호)		
3	간석동	3-10	잡종지	잡종지	2,627.0	2,627.0		1/4	나○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십정동)		
4	간석동	산6-4	임야	임야	1,488.0	1,488.0		1/4	이○홍	경상남도 김해시 월산로82-55,12**동 90*호(부곡동,월산마을부영아파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5	간석동	산7-1	임야	임야	298.0	298.0		1/4	이○홍	경상남도 김해시 월산로82-55,12**동 90*호(부곡동,월산마을부영아파트)	인천교통공사	
6	간석동	3-10	잡종지	잡종지	2,627.0	2,627.0		1/4	이○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10,10*동 70*호(성복동,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7	간석동	3-10	잡종지	잡종지	2,627.0	2,627.0		1/4	이○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십정동)		
8	간석동	산3-3	임야	임야				1/1	이○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190.0	1,190.0				7**(십정동)		
9	간석동	3-10	잡종지	잡종지	2,627.0	2,627.0		1/4	이○형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19,1**동 8**호(원당동,대한항공사원임대아파트)		
10	간석동	산14-3	임야	임야	5,933.0	5,933.0		1/1	재단법인○○○○장학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		
11	간석동	산14-3	임야	임야	171.0	171.0		1/1	재단법인○○○○장학재단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		
12	간석동	산6-4	임야	임야	1,488.0	1,488.0		1/4	조○환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494번길 7*,1**동 10*호(청천동,성**호빌라)		
13	간석동	산7-1	임야	임야	298.0	298.0		1/4	조○환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494번길 7*,1**동 10*호(청천동,성**호빌라)	인천교통공사	

석촌근린공원조성사업수용할물건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물건)

(단위:원)

일련번호	수용(사용)할 물건의 표시						사업시행자	수용재결신청지연일수	소 유 자			관 계 인	
	동(리)명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규격	면적 수량	단위	평가방법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합 계		3건										
1	간석동	3-10	울타리	철제기둥 철조망, L130 x 1.2m(H)	1	식	일식평가		1/4	나○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십정동)		
2	간석동	3-10	울타리	철제기둥 철조망, L130 x 1.2m(H)	1	식	일식평가		1/4	이○형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10,10*동 70*호(성복동,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3	간석동	3-10	울타리	철제기둥 철조망, L130 x 1.2m(H)	1	식	일식평가		1/4	이○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십정동)		
4	간석동	산3-3	저수조	시멘트콘크리트조, Ø6m x 5m(H)	1	식	일식평가		1/1	이○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십정동)		
5	간석동	산3-3	콘크리트 구조물	시멘트콘크리트조, 1.5 x 1.5 x 1.6m(D)	1	식	일식평가		1/1	이○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십정동)		
6	간석동	3-10	울타리	철제기둥 철조망, L130 x 1.2m(H)	1	식	일식평가		1/4	이○형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19,1**동 8**호(원당동,대한항공사원임대아파트)		

공 고

남동구 공고 제 2020-68호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남 동 구 청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 일원
 ○ 연 장 : 40.178㎞(하선기준, 공용구간 10.280㎞ 포함)
 ○ 사업기간 : 2021년~2025년
 ○ 사업시행자 : 국가철도공단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0.10.19.(월)~2020.11.13.(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지자체 명	관련부서 명	장 소	연락처
안양시	환경정책과	안양시청 환경정책과, 안양시청 교통정책과, 만안구청 환경위생과,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031)8045-5385
시흥시	환경정책과	시흥시청 환경정책과, 월곶동행정복지센터, 장곡동행정복지센터, 연성동행정복지센터	031)310-5972
광명시	환경관리과	광명시청 환경관리과, 소하2동행정복지센터	02)2680-2288
의왕시	환경과	의왕시청 환경과, 의왕시청 교통행정과, 청계동주민센터	031)345-3804
성남시	환경정책과	성남시청 환경정책과, 분당구청 환경자원과, 운중동행정복지센터	031)729-3152
과천시	교통과	과천시청 교통과	02)3677-2893
남동구	환경보전과	남동구 환경보전과	032)453-2602

3. 주민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후 7일 이내(2020.11.20.)

○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 서식에 의거 서면제출(양식은 공람장소에 비치)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4. 설명회 개최

지자체 명	일 시	장 소	비 고
안양시	2020년 11월 10일(화) 14:00, 16:00	안양시청 4층 회의실	
시흥시	2020년 11월 11일(수) 09:00, 11:00	파티인하우스	정왕동
광명시	2020년 11월 11일(수) 15:00	소하2동행정복지센터	
의왕시	2020년 11월 12일(목) 14:00	의왕시교통안전자전거교육장	
성남시	2020년 11월 13일(금) 09:00, 11:00	라온스퀘어	서현동

5. 기타사항

○ 본 설명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 대책을 준수하여 개최하며, 이에 따라 설명회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개최일 14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 위와 관련하여 설명회 장소별로 참석 인원 제한이 예상되며, 원활한 설명회 진행을 위해 진행인원의 안내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시간대별 1차, 2차 분산 개최 실시 예정임)

○ 설명회 인원 제한에 따라 설명회 자료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자료 게시 기간 : 2020. 11. 10 ~ 2020. 11. 20)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시 설명회는 비대면(온라인)으로 대체 될 수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및 공고문 등은 안양시청·시흥시청·광명시청·의왕시청·성남시청·과천시청·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042-607-4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교 복선전철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 약 문)

2020. 10.

국가철도공단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지역 간 철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서남부권에 철도망을 확충하여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일반철도로의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수인선,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경강선 등과 연계하여 남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서 간선철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함

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중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의 건설」의 대상범위인 4.0㎞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임

<표 2-1>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철도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사 업 내 용	◦총연장: 40.178㎞(하선기준), 공용구간 10.280㎞ 포함 -시흥시: 7.227㎞, 광명시: 1.433㎞, 안양시: 9.728㎞, 의왕시: 5.209㎞, 성남시: 6.301㎞ ◦정거장 9개소(신설 8개소, 개량 1개소)	

주) 공용구간: 신안산선 9.800㎞, 경강선 0.480㎞

3. 사업의 내용

◦ 위 치: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

- 시점: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일원

- 종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일원

◦ 사 업 기 간: 2021년 ~ 2025년

◦ 사 업 시 행 자: 국가철도공단

◦ 사업승인기관: 국토교통부

◦ 사업의 내용

구 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9공구	10공구
노선연장 (㎞)		1.903(상) 1.737(하)	0.460(상) 4.343(하)	1.122(상) 1.147(하)	2.301	1.856	3.139	2.889	0.639	5.861	5.986
노반 구성	터 널 (m)	710(상) 1,200(하)	460(상) 4,205(하)	191(상) 181(하)	2,301	1,716	3,109	2,747	474	5,719	5,815
	개 착 BOX (m)	-	-	695(상) 730(하)	-	-	-	-	-	-	-
	본 선 환기구	-	2개소	-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	2개소	2개소
	개 착 정거장 (m)	-	- 138(하)	236(상) 236(하)	-	140	30	142	165	142	171
	토 공 (m)	321(상) 96(하)	-	-	-	-	-	-	-	-	-
	교 량 (m)	872(상) 441(하)	-	-	-	-	-	-	-	-	-
정거장		1개소 (개량)	1개소 (신설)	1개소 (신설)	-	1개소 (신설)	1개소 (신설)	1개소 (신설)	1개소 (신설)	1개소 (신설)	1개소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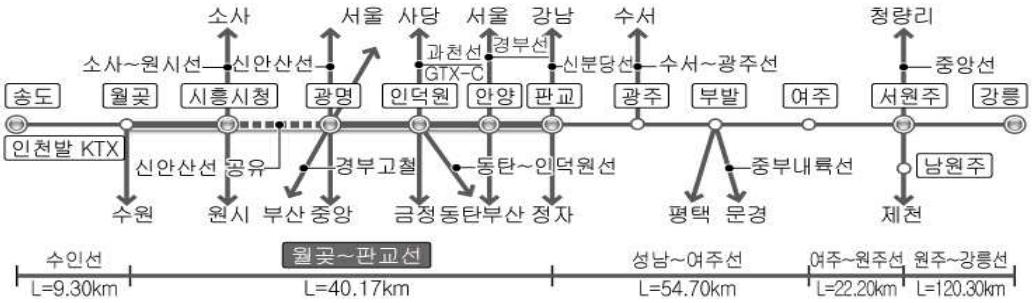

◦ 시설물 계획

- 터널 계획

<표 3-1>

터널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연장(m)	평면선형	형식	
1 공 구	◦710m(상선) ◦1,200m(하선)	◦R=600→450→2,200(상선) ◦R=6,000→600(하선)	◦단선터널(상선: 710m, 하선: 1,200m)	
2 공 구	◦460m(상선) ◦4,205m(하선)	◦R=1,300(상선) ◦R=800→5,000→500→800(하선)	◦복선터널(하선: 3,742m) 확폭터널(상선: 350m, 하선: 350m) 단선터널(상선: 110m, 하선: 113m)	
3 공 구	◦191m(상선) ◦181m(하선)	◦R=250(상선) ◦R=250(하선)	◦단선터널(상선: 191m, 하선: 181m)	
4 공 구	◦2,301m	◦R=500→2,000	◦복선터널(2,301m)	
5 공 구	◦1,716m	◦R=2,000	◦복선터널(1,716m)	
6 공 구	◦3,109m	◦R=30,000→400→700	◦복선터널(3,109m)	
7 공 구	◦2,747m	◦R=350→600→20,000→800	◦복선터널(2,747m)	
8 공 구	◦474m	◦R=7,000→10,000	◦복선터널(474m)	
9 공 구	◦5,719m	◦R=1,100→2,400	◦복선터널(5,719m)	
10 공 구	◦5,815m	◦R=4,000→800→1,000→2,400	◦복선터널(5,815m)	

- 교량 계획

<표 3-2>

교량 계획

구 분		구 간	연 장(m)	형 식	비고
1공구	월곶제1하선교	0㎞124～0㎞224(하)	100	PSC	
		0㎞224～0㎞259(하)	35	WDr	
		0㎞259～0㎞484(하)	225	PSC	
		0㎞484～0㎞509(하)	25	PSC	
		0㎞509～0㎞565(하)	56	SB-Arch	
	월곶제1상선교	0㎞124～0㎞224(상)	100	PSC	
		0㎞224～0㎞259(상)	35	WDr	
		0㎞259～0㎞484(상)	225	PSC	
		0㎞484～0㎞525(상)	41	PRECOM	
		0㎞525～0㎞605(상)	80	SB20	
	월곶제2상선교	0㎞882～0㎞935(상)	53	SB-Arch 하로	
		0㎞935～1㎞005(상)	70	WDr	
		1㎞005～1㎞058(상)	53	SB-Arch 하로	
		1㎞058～1㎞083(상)	25	PSC	
		1㎞083～1㎞143(상)	60	WDr	
		1㎞143～1㎞198(상)	55	SB-Arch 상로	
		1㎞198～1㎞273(상)	75	PSC	

- 개착구조물 계획

<표 3-3> 개착구조물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1공구	0㎞662(하)	◦월곶1터널	
	1㎞040(하)	◦경사갱	
	1㎞318(상)	◦월곶2터널	
2공구	2㎞412(하)	◦본선환기구#1	
	4㎞685(하)	◦장곡정거장, L=138m	
	5㎞928(하)	◦본선환기구#2	
3공구	6㎞261～6㎞583(하)	◦개착 BOX#1, L=322m	
	6㎞271～6㎞740(상)	◦개착 BOX#2, L=469m	
	6㎞688(하)	◦시흥시청정거장, L=236m(상), L=236m(하)	
	6㎞819～7㎞227(하)	◦개착 BOX#3, L=408m	
	6㎞976～7㎞202(상)	◦개착 BOX#4, L=226m	
4공구	18㎞230	◦본선환기구#3	
5공구	20㎞285	◦만안정거장, L=140m	
	21㎞156	◦본선환기구#4	
6공구	22㎞262	◦안양정거장, L=30m	
	23㎞695	◦본선환기구#5	
7공구	25㎞235	◦안양운동장정거장, L=142m	
	26㎞560	◦본선환기구#6	
8공구	27㎞746	◦인덕원정거장, L=165m	
9공구	28㎞878	◦본선환기구#7	
	30㎞150	◦청계정거장, L=142m	
	32㎞182	◦본선환기구#8	
10공구	34㎞986	◦본선환기구#9	
	37㎞099	◦서판교정거장, L=171m	
	39㎞213	◦본선환기구#10	

- 정거장 계획

<표 3-4> 정거장 계획

구 분		위 치	역사규모	승강장 형식	비고
1공구	월곶정거장	0㎞000	지상2층	상대식	개량
2공구	장곡정거장	4㎞685	지하3층	상대식	신설
3공구	시흥시청정거장	6㎞688	지하2층	상대식	신설
5공구	만안정거장	20㎞285	지하4층	상대식	신설
6공구	안양정거장	22㎞262	지하6층	상대식	신설
7공구	안양운동장정거장	25㎞235	지하3층	상대식	신설
8공구	인덕원정거장	27㎞746	지하4층	상대식	신설
9공구	청계정거장	30㎞150	지하3층	상대식	신설
10공구	서판교정거장	37㎞099	지하2층	상대식	신설

- 본선 환기구 계획

<표 3-5> 본선 환기구 계획

구 분		위 치	형 식	팬용량 (CMM)	팬직경 (㎜)	수 량	TYPE
2 공 구	본선환기구# 1	2㎞412	급 기	4600	2200	4	A
	본선환기구# 2	5㎞928	급 기	6200	2600	3	C
4 공 구	본선환기구# 3	18㎞230	급 기	6200	2600	3	C
5 공 구	본선환기구# 4	21㎞156	급 기	4600	2200	4	A
6 공 구	본선환기구# 5	23㎞695	급 기	3300	1800	3	B
7 공 구	본선환기구# 6	26㎞560	급 기	3300	1800	3	B
9 공 구	본선환기구# 7	28㎞878	급 기	6200	2600	3	C
	본선환기구# 8	32㎞182	급 기	6200	2600	3	C
10 공 구	본선환기구# 9	34㎞986	급 기	4600	2200	4	A
	본선환기구#10	39㎞213	급 기	3300	1800	3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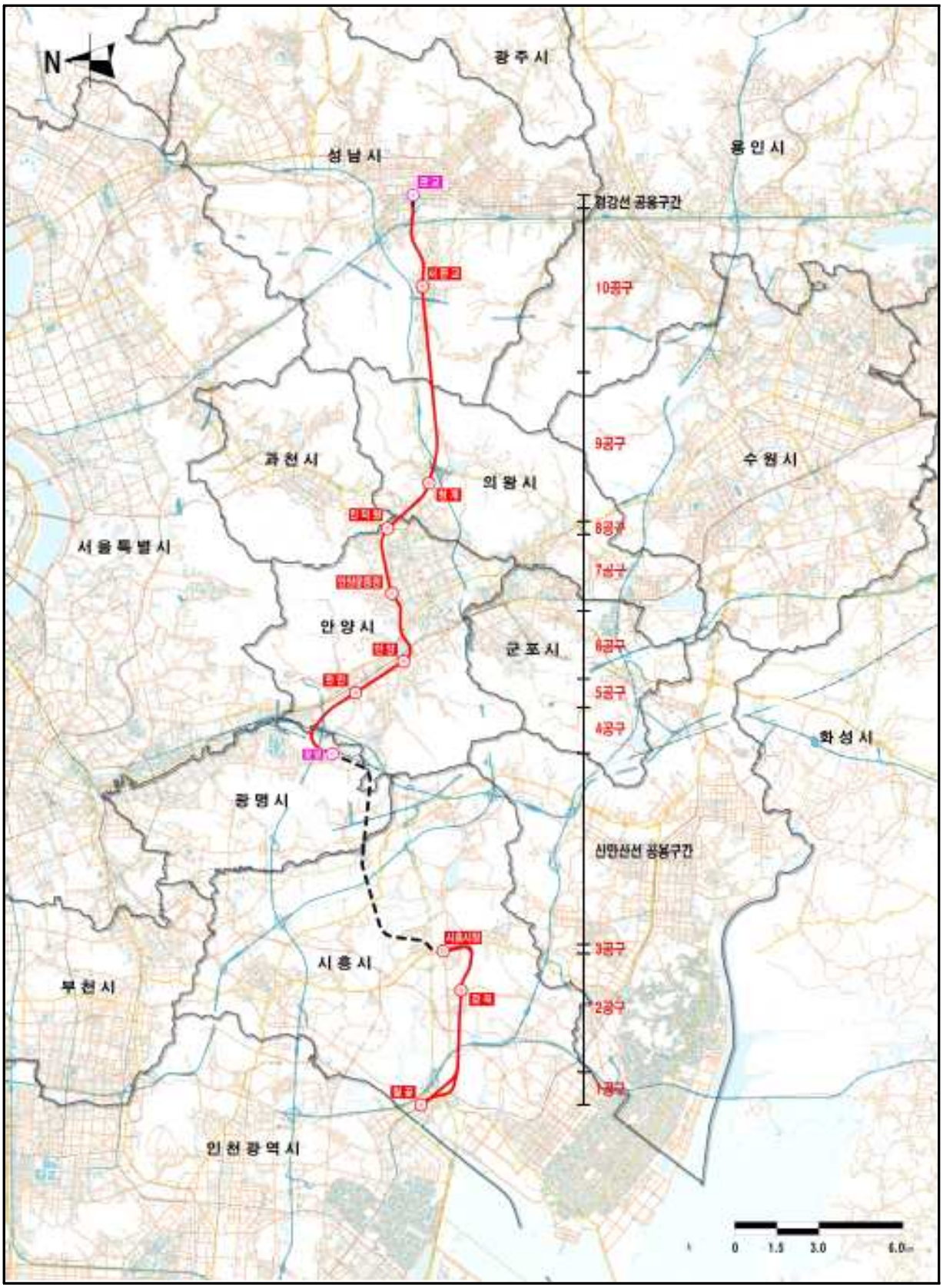

<그림 3-1> 사업노선 위치도

4.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05호)」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였으며,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시행으로 공사시 및 운영시 자연생태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지역 일대의 지리·지형적 특성, 환경영향 대상시설 분포 현황 등을 반영하여 각 항목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4-1>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구 분		평가대상 지역 설정 기준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사유)
		공간적범위	시간적 범위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1.0㎞ 이내)	◦공사시 ◦운영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사업노선과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1.0㎞이내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하였음
	자연환경자산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노선과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하였음
대기환경	기 상	◦인근 기상대 (수원기상대)	◦최근 10년간	◦주변 기상대의 지난 10년간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예측 및 분석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였음
	대기질 (온실가스)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1.0㎞ 이내)	◦공사시 ◦운영시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질 영향이 예상되므로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1.0㎞를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하였음
수환경	수 질	◦사업노선 및 인근 수계	◦공사시 ◦운영시	◦강우시 토사 유입, 개착 및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 영향, 공사인부 오수 발생과 운영시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수계를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하였음

(표 계속)

구 분		평가대상 지역 선정 기준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사유)
		공간적범위	시간적 범위	
토지 환경	토지이용	◦사업노선	◦공사시 ◦운영시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하였음
	토 양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공사시 공사장비 발생 폐유 및 지장물 철거 등에 따른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하였음
	지형·지질	◦사업노선	◦공사시	◦공사에 따른 지형형상 및 개착, 터널공사에 의한 지반 침하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하였음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업노선	◦공사시 ◦운영시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노선(개착구간, 정거장 등)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하였음
	소음·진동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1.0㎞ 이내)	◦공사시 ◦운영시	◦공사시 건설장비의 가동 및 운영시 열차 운행에 따라 인근 지역에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므로 1.0㎞ 이내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하였음
	위락·경관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정거장 및 환기구 등의 구조물 설치 등을 고려하여 조망 가능한 주변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하였음
	전파장해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0.5㎞ 이내)	◦운영시	◦운영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전파장해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하였음
	일조장해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업노선(교량구조물)에 의한 일조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회·경제 환경	인구·주거·산업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업시행으로 인해 인구·주거, 산업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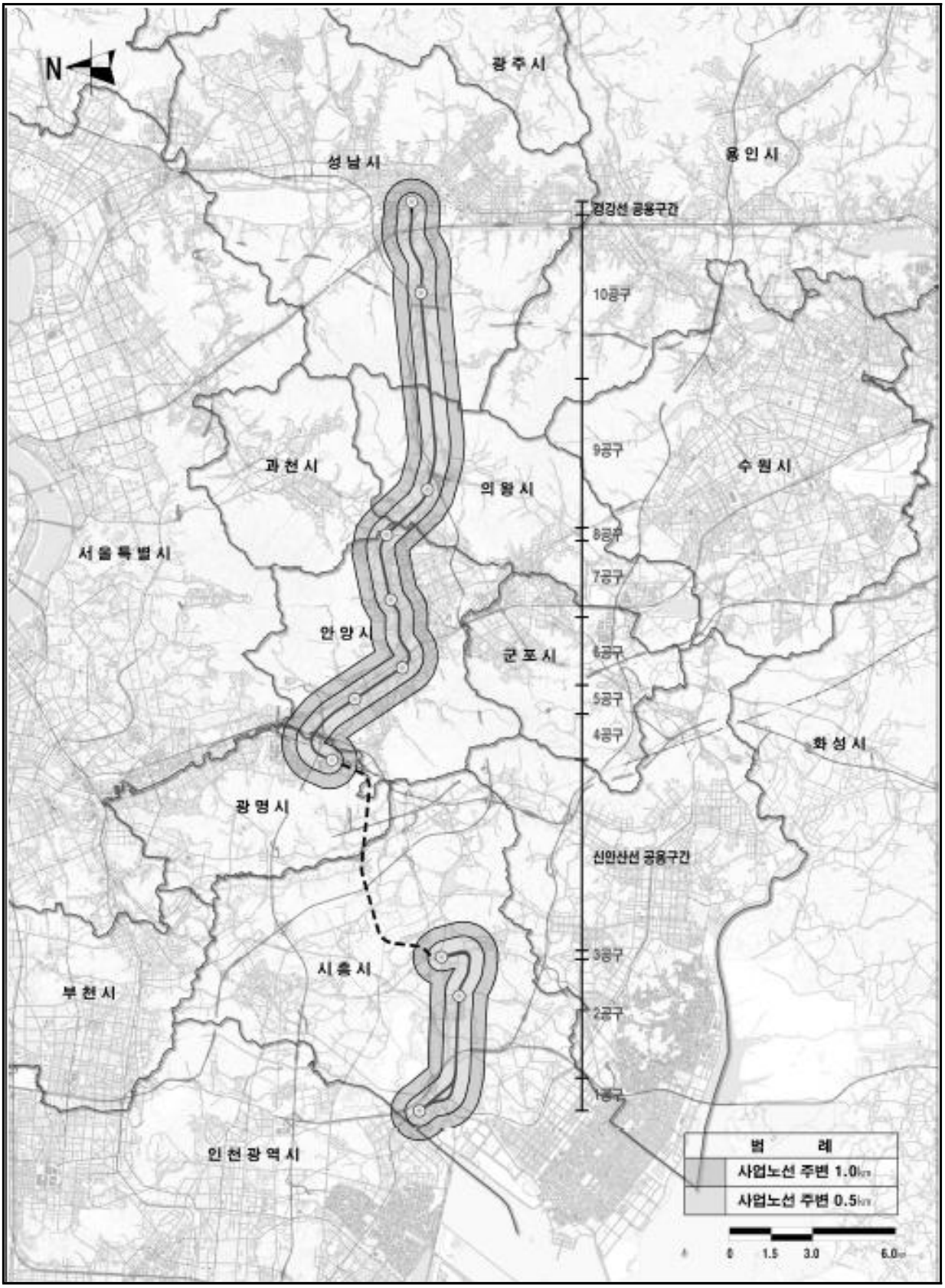

<그림 4-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4.2 환경영향평가 예측 및 분석에 관한 내용

◦ 본 환경영향평가시 적용된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4-2>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예측·평가 방법

구 분		예측·평가 방법	관련자료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사업시행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동·식물 변화 정도를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청문조사를 통해 분석	◦전국자연환경조사 ◦생태·자연도
	자연환경자산	◦사업시행으로 사업노선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호구역 등 현황 조사
대기 환경	기 상	◦사업노선 인근 기상대(수원기상대), 지상관측장비의 자료를 정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은 기존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분석	◦기상연보(2009～2018년)
	대기질 (온실가스)	◦공사시 장비가동 및 개착, 터널공사시 영향을 대기확산식을 이용하여 예측 ◦운영시 지하철 운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파악 및 영향예측 ◦사업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이용 변화를 예측·평가	◦현지조사 ◦AERMOD ◦건설공사표준품셈 ◦사업관련 설계보고서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수환경	수 질	◦공사시 토사유출 및 공사인부 오수 발생에 의한 영향 분석 ◦개착 및 터널 공사시 주변 지하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인근 수계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운영시 정거장 오수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 분석	◦현지조사 ◦건설공사표준품셈 ◦사업관련 설계보고서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토지 환경	토지이용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통해 사업노선과의 관련성 검토	◦2019 통계연보 ◦사업관련 설계보고서
	토 양	◦공사장비 발생 폐유 및 지장물 철거에 의한 토양 영향 예측	◦현지조사 ◦토양측정망 및 실태조사결과

(표 계속)

구 분		예측·평가 방법	관련자료
토지 환경	지형·지질	◦토공사로 인한 토공량 예측 ◦개착 및 터널공사에 의한 지반침하 영향 예측	◦지형도 및 한국지질도 ◦사업관련 설계보고서 ◦사업관련 지반보고서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되는 폐기물량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처리대책 수립	◦2019 통계연보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 현황(2018년)
	소음·진동	◦공사시 투입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도를 거리 감쇠식으로 예측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예측 ◦운영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진동 영향 예측	◦건설기계류의 소음 특성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 지침 ◦사업관련 설계보고서
	위락·경관	◦정거장 및 환기구 등의 구조물 설치로 인한 경관상의 변화 예측	◦2019 통계연보 ◦사업관련 설계보고서
	전파장해	◦지하철 운행에 따른 전파장해 영향 예측	◦문헌자료 및 유사사례 분석
	일조장해	◦교량구조물에 의한 일조장해 범위 검토	◦기상연보(2009～2018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
사회·경제 환경	인구·주거·산업	◦사업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산업 변화 검토	◦2019 통계연보

5. 지역개황

◦ 환경관련지역 지정현황

<표 5-1> 환경관련지역 지정현황

환경관련지역	관할구역 관련내용					사업노선과의 관계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	-	-	-	-	해당 없음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관리 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관리권역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 전역
저황유공급 및 사용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0의2]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 전역
악취관리지역	시화국가 산업단지	-	-	-	-	약 5.6㎞ 이격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	-	-	-	-	해당 없음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	-	-	해당 없음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지역	환경부고시 제2007-107호					“가”,“나” 지역
수변구역	-	-	-	-	-	해당 없음
수질오염총량관리유역	-	“안양A"	“안양A"	“안양A"	“탄천A"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	-	-	-	-	해당 없음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시화호 · 인천연안	-	-	-	-	특별관리해역 외 지역
중권역별 물환경목표기준	“Ⅱ등급”	“Ⅰb등급”				“한강서해”, 한강서울” 중권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정맥	-	-	-	관악지맥	관악지맥	9공구 통과
생태·경관보전지역	-	-	-	-	-	해당 없음
생태계 변화관찰지역	-	-	-	-	-	해당 없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	-	-	-	해당 없음
야생생물보호구역	-	1개소	2개소	3개소	-	약 1.77㎞~ 9.94㎞ 이격
천연기념물	-	-	-	-	-	해당 없음
습지보호지역	시흥갯벌	-	-	-	-	약 2.39㎞ 이격
특정도서	-	-	-	-	-	해당 없음
철새도래지	-	-	-	-	-	해당 없음
자연공원	-	-	수리산 도립공원	-	남한산성 도립공원	약 1.85㎞~ 6.96㎞ 이격
수산자원보호구역	-	-	-	-	-	해당 없음

6. 대안의 설정 및 비교·검토

6.1 대안의 설정

◦ 본 사업은 동서측 철도네트워크의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서남부지역에 철도망을 확충하여 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일반철로의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적의 노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대안(평면 및 종단선형 계획)을 설정하였음

<표 6-1> 대안의 구분

구 분	대안별 검토내용
평면선형	◦곡선반경 확대 ◦완화곡선 종곡선 경합해소 ◦도심지 구간 통과시 사유지 및 시설물 저촉 최소화 ◦정거장 직석구간 확보
종단선형	◦운전성능 향상을 위한 종단기울기 완화 ◦하천 및 시설물 상·하부통과 안정성 확보 ◦정거장 심도 최소화를 통한 이용객 편의성 및 공사비 최소화

6.2 대안의 평가

가. 1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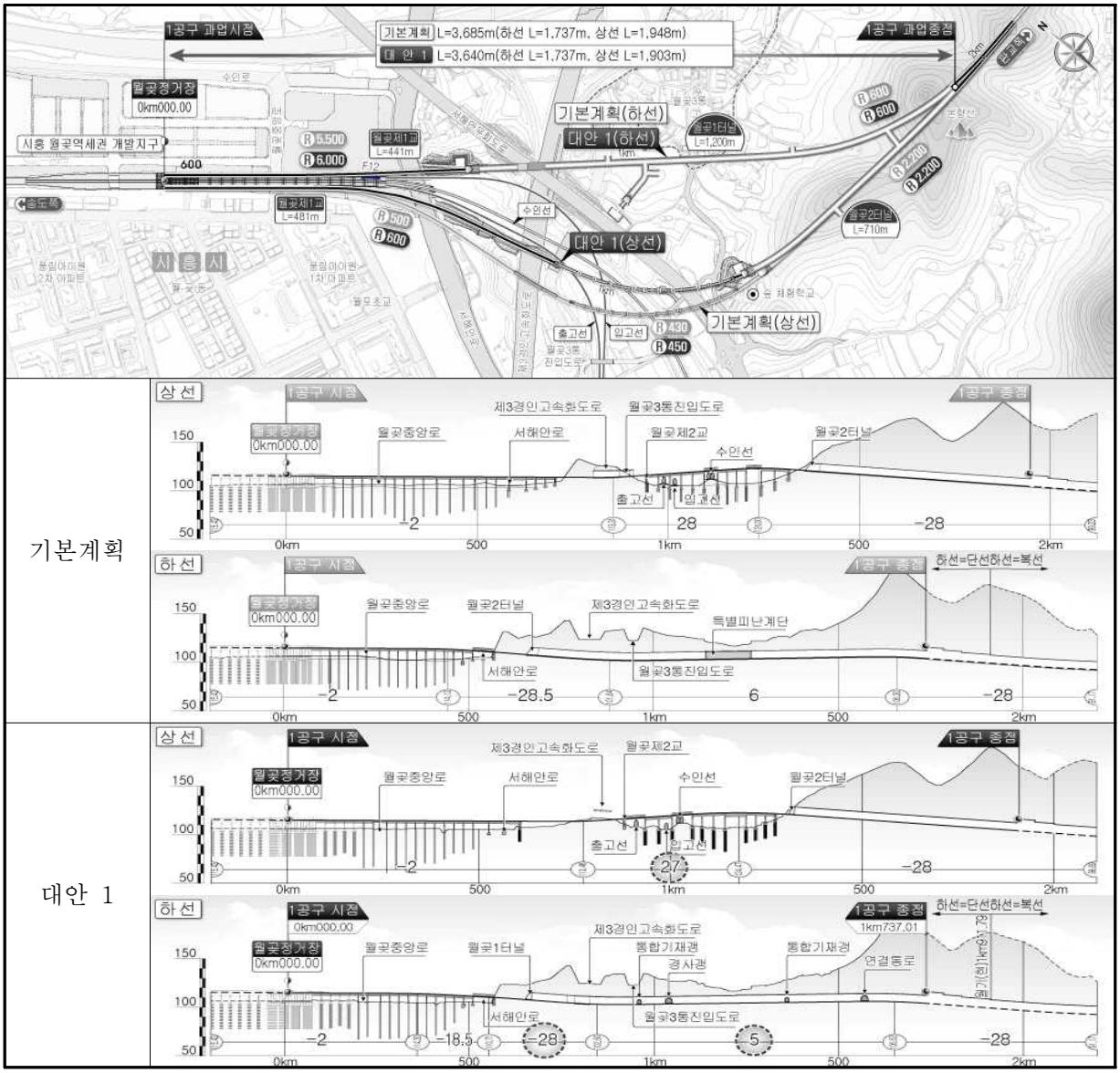

<그림 6-1> 1공구 대안노선 검토

<표 6-2>

1공구 대안검토 결과

구 분			기본계획	대안 1
노선특징			◦월곶3통 개착BOX 통과노선 ◦제3경인고속화도로 비개착 통과	◦월곶3통 터널 통과노선(하선) ◦제3경인고속화도로 비개착 통과
노선연장	하 선		1,737m	1,737m (증 0m)
	상 선		1,948m	1,903m (감 45m)
평면선형	곡선개소	하선	2개소	2개소
		상선	3개소	3개소
	최소곡선반경	하선	600	600
		상선	430	450
종단선형	기울기변곡점	하선	3개소	4개소
		상선	2개소	2개소
	최급기울기(‰)	하선	28.5	28.0
		상선	28.0	28.0
선형경합사항			2개소	완전 해소
제3경인고속화도로			도로 하부 비개착 2개소	도로 하부 비개착 1개소
편입용지			50,062㎡	61,309㎡ (증 11,247㎡)
검토결과			◦월곶3통을 터널로 통과(하선)하고, 선형경합을 완전히 해소 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비개착 1개소인 대안1을 최적안으로 선정함	

나. 2, 3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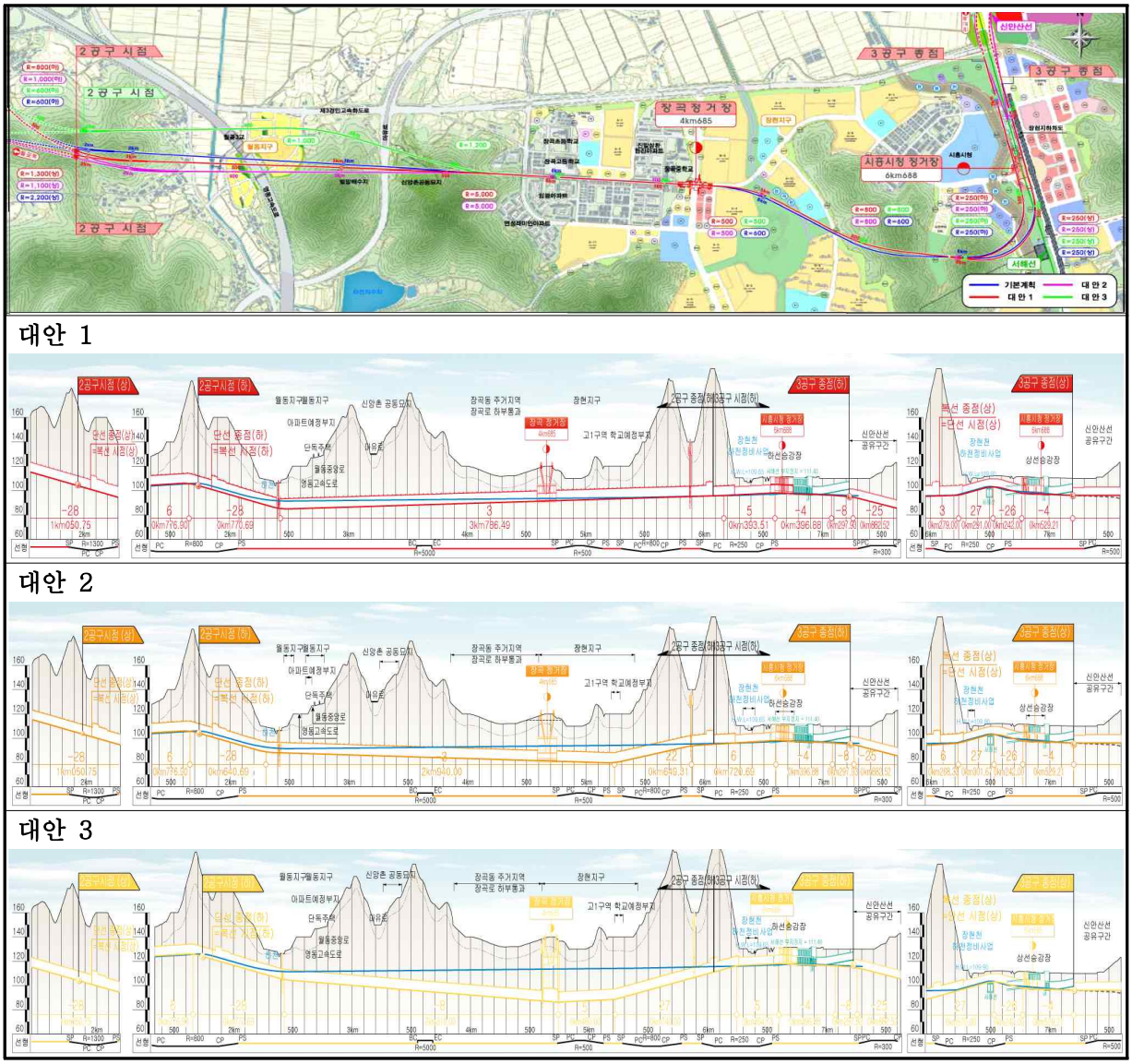

<그림 6-2> 2, 3공구 대안노선 검토

<표 6-3> 2, 3공구 대안검토 결과(평면선형)

구 분		기본계획	대안 1	대안 2	대안 3
노선특성		○ 지하구간 1‰ 종단계획	○ 배수를 고려하여 지하구간 3‰ 이상 종단계획	○ 배수를 고려하여 지하구간 3‰ 이상 종단계획	○ 배수를 고려하여 지하구간 3‰ 이상 종단계획
노선연장 (운행선기준)		하 L=5,469m 상 L=5,407m	하 L=5,490m 상 L=5,322m	하 L=5,499m 상 L=5,466m	하 L=5,460m 상 L=5,434m
터널	복선	3,915m	3,742m	3,557m	3,918m
	확폭	282m	350m	460m	232m
	단선	하158m+상163m=322m	하294m+상301m=595m	하345m+상347m=692m	하182m+상192m=374m
개착BOX		하762m+상697m=1,460m	하730m+상695m=1,425m	하772m+상736m=1,508m	하772m+상736m=1,508m
개착정거장		538m(장곡162m, 시흥시청188m(상・하))	610m(장곡138m, 시흥시청236m(상・하))	548m(장곡162m, 시흥시청193m(상・하))	548m(장곡162m, 시흥시청193m(상・하))
평 면	곡선 개소	4개소(최소 250m/최대 800m)	5개소(최소 250m/최대 5,000m)	5개소(최소 250m/최대 5,000m)	6개소(최소 250m/최대 1,200m)
	곡선 반경	600 → 600 → 600 → 250	800 → 5,000 → 500 → 800 → 250	1,000 → 5,000 → 500 → 800 → 250	600 → 1,000 → 1,200 → 500 → 800 → 250
종단기울기 (‰)		5개소(최급기울기 28) -28 → 1 → 2 → 4 → -4 (상 2 → 27 → -27 → -4)	5개소(최급기울기 28) -28 → 3 → 5 → -4 → -8 (상 3 → 27 → -26 → -4)	5개소(최급기울기 28) -28 → 3 → 5 → -4 → -8 (상 3 → 27 → -26 → -4)	5개소(최급기울기 28) -28 → 3 → 5 → -4 → -8 (상 3 → 27 → -26 → -4)
시공성		○ 영동고속도로 교대 직하부 통과로 시공성 저하	○ 영동고속도로 교대 우회통과로 시공성 개선	○ 영동고속도로 교대 우회통과로 시공성 개선	○ 영동고속도로 교대 우회통과로 시공성 개선
검토결과		○ 기본계획노선은 1‰ 종단계획으로 배수 측면에서 불량, 대안3은 곡선개소 과다로 열차운영 측면에서 불리 ○ 영동고속도로 우회통과 및 노선연장이 대안2 대비 유리한 대안1을 최적안으로 선정함			

<표 6-4> 2, 3공구 대안검토 결과(종단선형)

구 분	대안 1	대안 2
노선개요	◦지하구간 배수기울기 확보 및 종단선형 하향 선형	◦기본계획 대비 종단선형을 하향조정하여 터널 풍화대 통과로 시공성 유리
기울기 (‰)	-28 → 3 → 5 → -4 → -8 (상 3 → 27 → -26 → -4)	-28 → -3 → 22 → 6 → -4 → -8 (상 3 → 27 → -26 → -4)
시공성	◦기본계획 대비 장곡정거장 심도 2m 하향으로(심도 h=23m)로 정거장 이용자 편의성 확보	◦대안1 대비 장곡정거장(심도 h=33m) 하향 계획으로 시공성 불리 및 정거장 이용자 편의성 저하
검토결과	◦대안2, 대안3은 최적 대안인 대안1 대비 굴착심도 증가 등에 따른 시공성 불리, 정거 최적안으로 선정함	

다. 4, 5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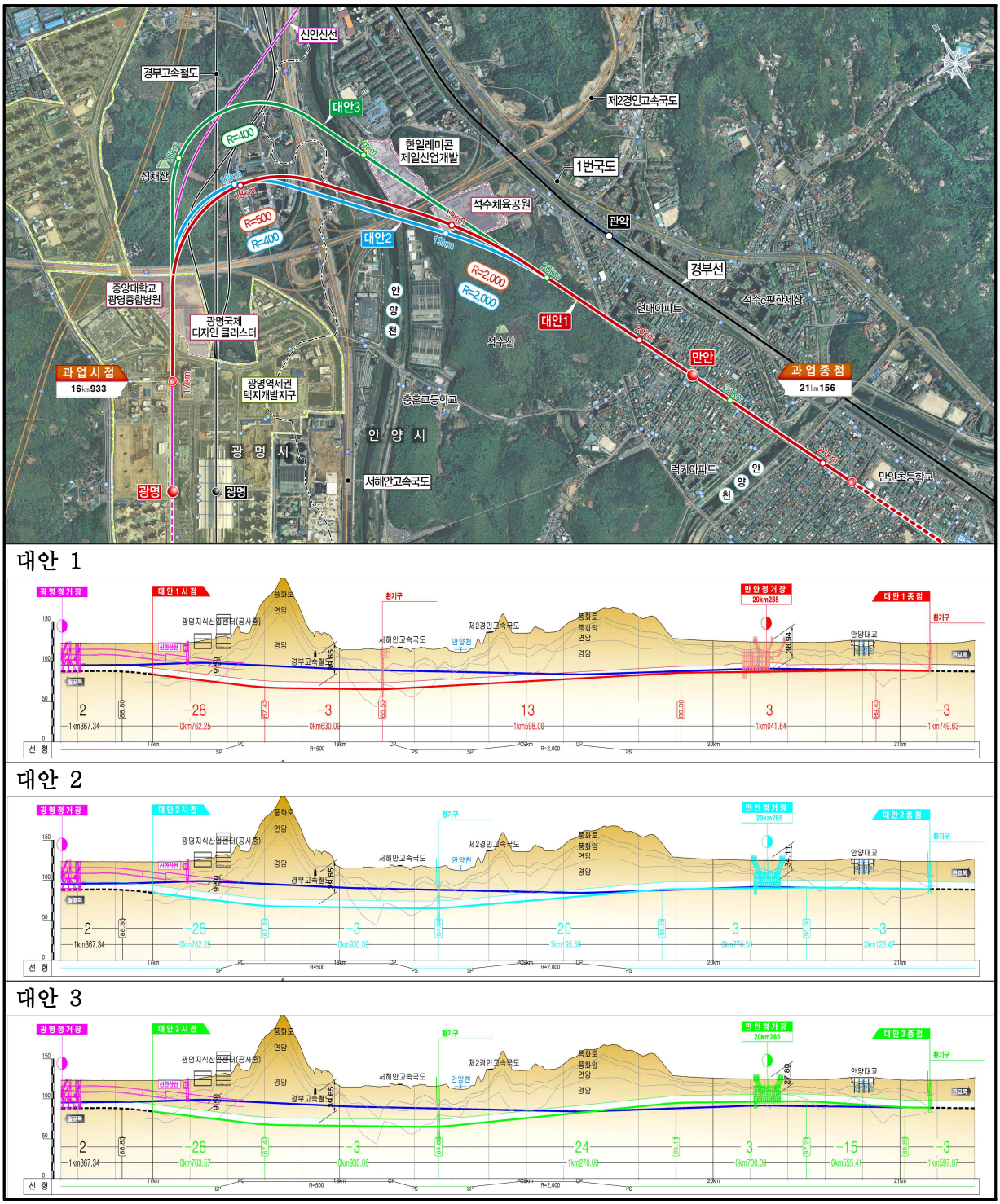

<그림 6-3> 2, 3공구 대안노선 검토

<표 6-5> 4, 5공구 대안검토 결과(평면선형)

구 분		기본계획	대안 1	대안 2	대안 3
노선특성		○단선 병렬로 신안산선 공용구간을 지나 광명역 종점부에서부터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하여 복선으로 안양로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	○광명정거장 구간 신안산선과 선별분리하여 복선 계획	○광명정거장 구간을 상하 분리하여 복선으로 계획	○IP를 축소하여 선형조건 개선
노선연장		L=5,854m	L=4,157m(감 1,697m)	L=4,168m(감 1,686m)	L=4,665m(감 1,189m)
노반 구성	터널	5,714m	4,017m(감 1,697m)	4,028m(감 1,686m)	4,525m(감 1,189m)
	개착 정거장	140m(1개소, 만안)	140m(1개소, 만안)	140m(1개소, 만안)	140m(1개소, 만안)
평 면	곡선 개소	2개소(최소 500m/최대 600m)	2개소(최소 500m/최대 2,000m)	2개소(최소 400m/최대 2,000m)	1개소(최소 400m)
	곡선 반경	500m → 600m	500m → 2,000m	400m → 2,000m	400m
종 단	기울기 개소	5개소(최급기울기 11)	5개소(최급기울기 28)	5개소(최급기울기 28)	6개소(최급기울기 28)
	기울기 (‰)	8 → -11 → -5 → 8 → 3	-28 → -3 → 13 → 3 → -3	-28 → -3 → 20 → 3 → -3	-28 → -3 → 24 → 3 → -15 → -3
시공성		○광명정거장 이후 단선 병렬구간 시공성 불리	○단선병렬구간을 배제하고 복선으로 계획, 시공성 향상	○제2경인고속도로 교대 하부통과로 시공성 불리	○IP축소로 인한 직선구간 확대로 시공성 향상
검토결과		○대안1의 경우 광명정거장 이후 단선병렬구간 시공성 불리 ○대안2의 경우 제2경인고속도로 교대 하부통과에 따른 시공성 불리 ○대안3의 경우 곡선개소는 축소되나, 노선연장 과다 ○따라서, 노선연장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단선병렬구간을 배제하고 복선으로 계획하여 시공성이 향상되는 대안1을 최적안으로 선정함			

< 표 6-6 >

4, 5공구 대안검토 결과(종단선형)

구 분		기본계획	대안 1	대안 2	대안 3
노선개요		○정거장 굴착심도 33.49m로 3층 정거장으로 계획	○정거장 굴착심도 36.90m로 4층 정거장으로 계획	○정거장 굴착심도 34.11m로 3층 정거장으로 계획	○정거장 굴착심도 27.80m로 3층 정거장으로 계획
종단	개 소	5개소	5개소	5개소	6개소
	기울기 (‰)	8 → -11 → -5 → 8 → -3	-28 → -3 → 13 → 3 → -3	-28 → -3 → 20 → 3 → -3	-28 → -3 → 24 → 3 → -15 → -3
	최 급 기울기 (‰)	11	28	28	28
종 곡 선 반 경		최소 6,000m (V=150km/h, 부득이한 경우)	최소 5,000m (V=120km/h)	최소 5,000m (V=120km/h)	최소 5,000m (V=120km/h)
시공성		○광명정거장 이후 터널구간 풍화대 통과로 시공성 불리 ○경부고속철도 하부 근접 통과로 안전성 및 시공성 불리 ○정거장 전후 터널구간 기반암 최소 토피고를 확보하지 못하여 안정성 불리	○광명정거장 이후 터널구간 기반암대 통과로 시공성 유리 ○경부고속철도 하부 이격 통과로 안전성 및 시공성 유리 ○정거장 전후 터널구간 기반암 최소 토피고를 확보하여 안정성 유리	○광명정거장 이후 터널구간 기반암대 통과로 시공성 유리 ○경부고속철도 하부 이격 통과로 안전성 및 시공성 유리 ○정거장 전후 터널구간 기반암 최소 토피고를 확보하지 못하여 안정성 불리	○광명정거장 이후 터널구간 기반암대 통과로 시공성 유리 ○경부고속철도 하부 이격 통과로 안전성 및 시공성 유리 ○정거장 전후 터널구간 기반암 최소 토피고를 확보하지 못하여 안정성 불리
검토결과		○대안2는 정거장 전후 터널 기반암 통과구간의 최소 토피고 미확보로 인하여 시공성 측면에서 불리함 ○대안3은 정거장 굴착심도를 최소화하여 이용객 편의성이 우수하나, 정거장 전후 터널 기반암 통과구간의 최소 토피고 미확보로 인하여 시공성 측면에서 불리함 ○대안1은 정거장 전후 터널 기반암 통과구간의 최소 토피고 확보로 인하여 시공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여 최적안으로 선정함			

라. 6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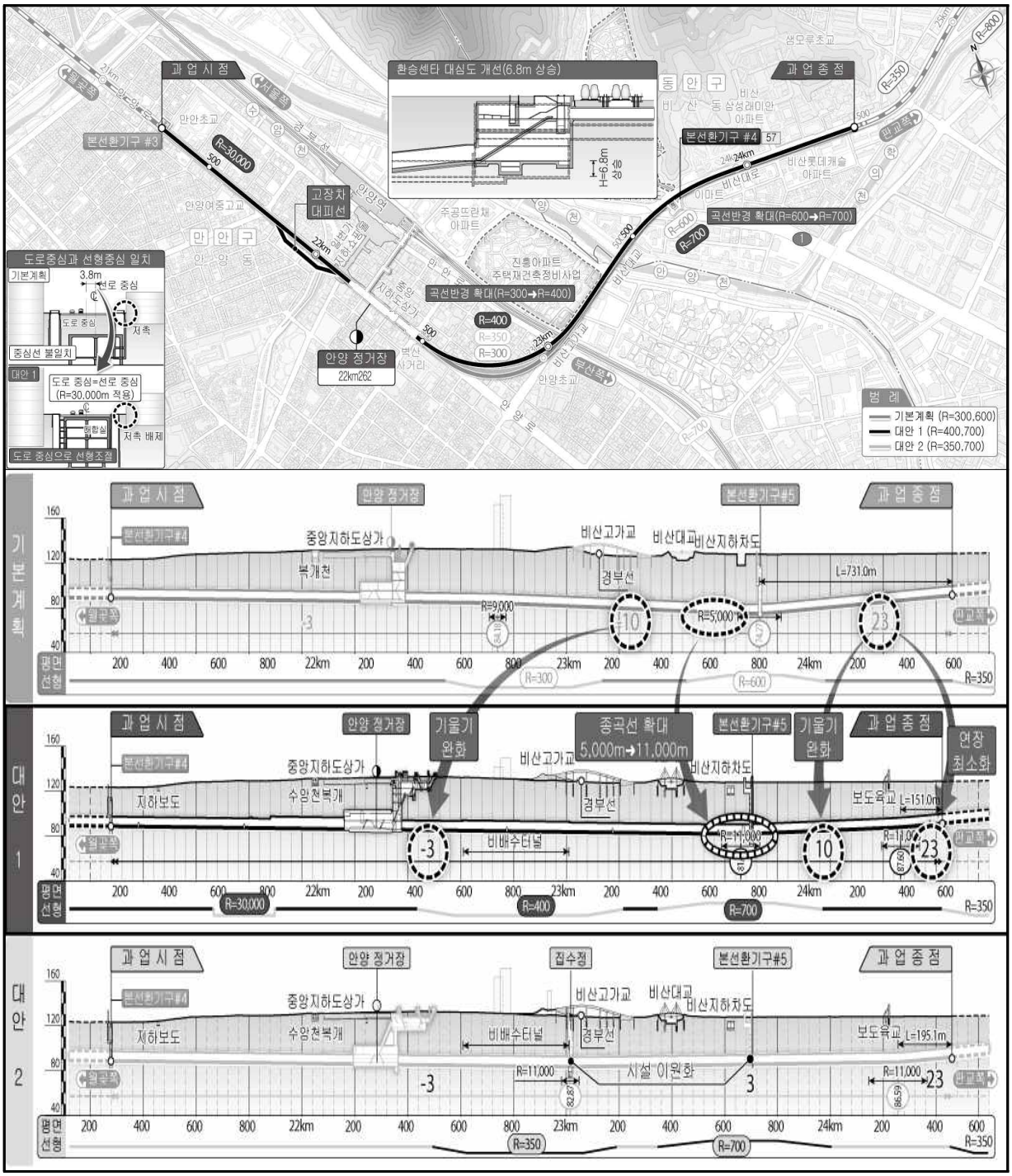

<그림 6-4> 6공구 대안노선 검토

<표 6-7> 6공구 대안검토 결과

구 분	기본계획	대안 1	대안 2
노 선 연 장	3,185m	3,139m(감 45m)	3,173m(감 12m)
최소곡선반경	300m	400m	350m
제 한 속 도 (열차운전세칙)	300 → 70㎞/h 600 → 110㎞/h	400 → 90㎞/h (증 20㎞/h) 700 → 120㎞/h (증 10㎞/h)	350 → 90㎞/h (증 20㎞/h) 700 → 120㎞/h (증 10㎞/h)
최급기울기 (‰)	23(L=731m)	23(L=151m, 감 580m)	23(L=195m 감 536m)
종곡선반경	9,000m, 5,000m	11,000m, 11,000m	11,000m, 11,000m
정 거 장	터널 + 개착정거장	전구간 터널정거장	전구간 터널정거장
대합실 연결	개착정거장(L=50m)	본선개착 연결	경사갱 + 연직갱 연결
유 지 보 수	집수정 환기구 일원화	집수정 환기구 일원화	집수정 환기구 이원화
검토결과	◦최단노선이며, 3‰구간 연장 확대, 23‰연장 최소화를 통한 평균기울기 개선(9.8‰→5.1‰)으로 열차운영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안1을 최적안으로 선정함		

마. 7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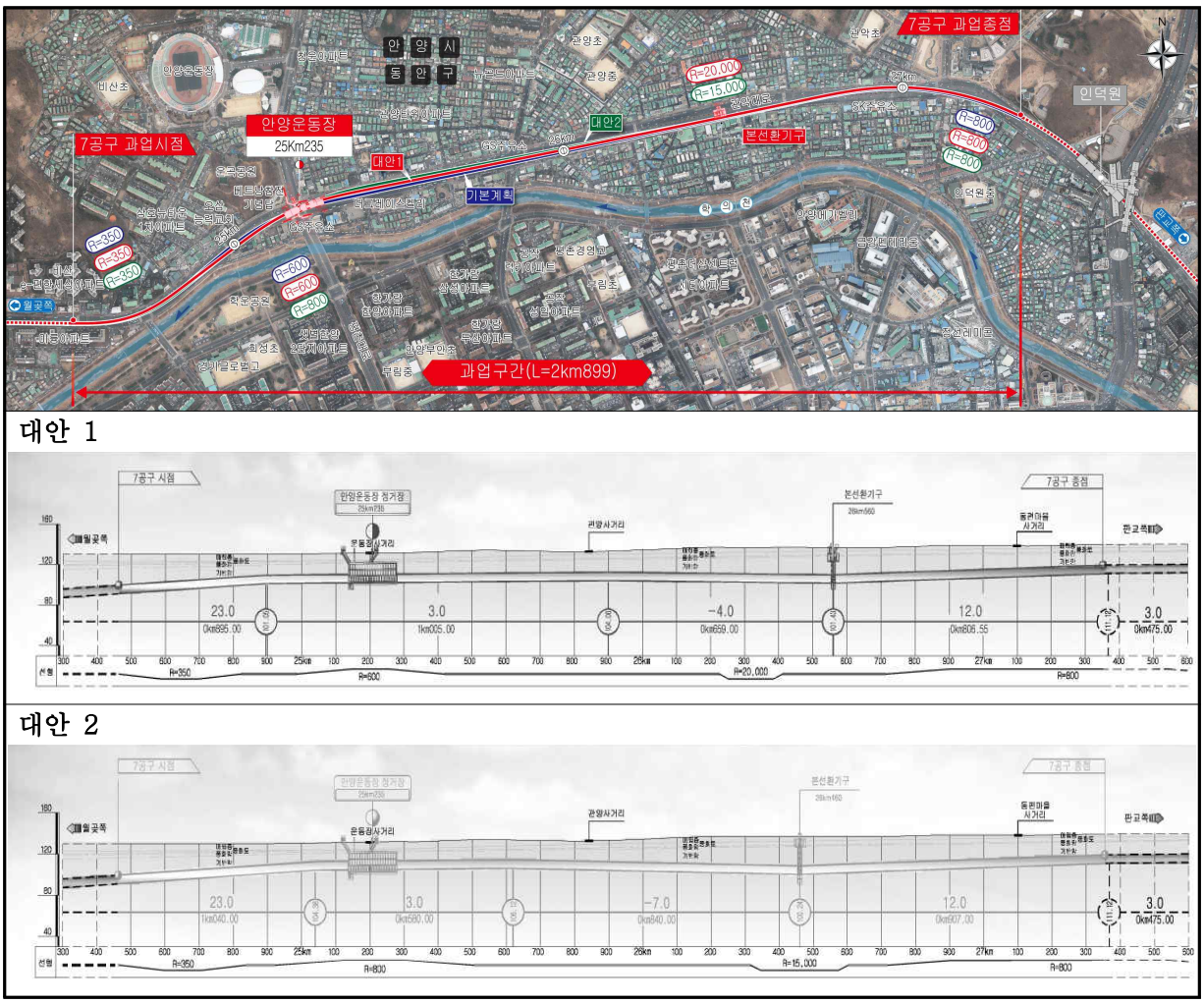

<그림 6-5> 7공구 대안노선 검토

<표 6-8> 7공구 대안검토 결과(평면선형)

구 분		기본계획	대안 1	대안 2
노선특성		○ 관악대로(왕복10차로) 중심을 따라 노선계획 ○ 정거장 시점측 구간에서 종곡선과 완화곡선 선로경합 발생	○ 관악대로(왕복10차로) 중심을 따라 노선계획 ○ 선형변경으로 종곡선과 완화곡선 선로경합 해소로 열차주행안정성 향상	○ 관악대로(왕복10차로) 중심을 따라 노선계획 ○ 정거장 시점측 구간에서 종곡선과 완화곡선 선로경합 발생 ○ 안양운동장정거장 구간 곡선반경 확대로 원곡선에 위치하도록 계획
노선연장		L=2,891m	L=2,889m(감 2m)	L=2,892m(증 1m)
노반구성	터널	2,749m	2,747m(감 2m)	2,750m(증 1m)
	개착정거장	142m(1개소, 안양운동장)	142m(1개소, 안양운동장)	142m(1개소, 안양운동장)
평 면	곡선개소	3개소(최소 350m/최대 800m)	4개소(최소 350m/최대 20,000m)	4개소(최소 350m/최대 15,000m)
	곡선반경	350m → 600m → 800m	350m → 600m → 20,000m → 800m	350m → 800m → 15,000m → 800m
종 단	기울기개소	4개소(최급기울기 23)	4개소(최급기울기 23)	4개소(최급기울기 23)
	기울기(‰)	23 → 3 → -5 → 12	23 → 3 → -4 → 12	23 → 3 → -7 → 12
시공성		○ 안양운동장정거장 완화곡선과 원곡선 구간에 위치하여 시공성 불리	○ 안양운동장정거장 완화곡선과 원곡선 구간에 위치하여 시공성 불리	○ 안양운동장정거장 원곡선구간에 위치하여 시공성 유리
검토결과		○ 기본계획은 종곡선과 완화곡선 선로경합 발생으로 열차주행 안정성이 불리 ○ 대안2의 경우 곡선1개소 추가 및 안양운동장정거장 곡선반경 확대로 원곡선에 정거장이 위치하도록 계획하여 시공성 향상을 고려하였으나, 종곡선과 완화곡선 선로경합 발생으로 열차주행 안정성이 불리 ○ 따라서, 선형변경으로 종곡선 설치위치를 완화곡선에서 직선측으로 변경하여 종곡선과 완화곡선 선로경합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안1을 최적안으로 선정함		

<표 6-9> 7공구 대안검토 결과(종단선형)

구 분		대안 1	대안 2
노선개요		○ 선형변경으로 종곡선 설치위치를 완화곡선에서 직선측으로 변경하여 선로경합 해소 ○ 안양운동장정거장 구배 3‰ 적용 ○ 기본계획 대비 종단선형 하향조정으로 지장물(하수박스)과의 이격거리 확보로 시공성 및 안정성 유리	○ 기본계획과 거의 동일한 종단 계획 ○ 안양운동장 정거장 구배 3‰ 적용
종단	개소	4개소	4개소
	기울기 (‰)	23 → 3 → -4 → 12	23 → 3 → -7 → 12
	최급기울기 (‰)	23	23
시공성		○ 종단하향으로 터널 굴착시 기반암 통과로 시공성 양호 ○ 본선환기구 종곡선 배제로 굴착심도(H=0.8m) 상향 ○ 터널 굴착심도 증가로 발파 굴착 용이 ○ 종단선형 하향조정으로 정거장 상부 지장물(하수박스) 저촉 해소 ○ 안양운동장정거장이 완화곡선과 원곡선 구간에 위치	○ 기본계획 종단과 거의 동일하며 터널 굴착시 기반암 통과로 시공성 양호 ○ 개착정거장 굴착심도 증가 ○ 정거장 상부 지장물(하수박스) 저촉 예상 ○ 안양운동장정거장이 원곡선 구간에 위치
검토의견		○ 대안2는 종단계획상 기본계획 종단과 기울기변환점 위치가 거의 동일하여 종곡선과 완화곡선 선로경합 발생 ○ 대안1은 종곡선과 완화곡선간 선로경합 해소 및 정거장과 지장물(하수박스) 저촉 배제, 터널 굴착시 시공성 등이 유리하여 최적안으로 선정함	

바. 8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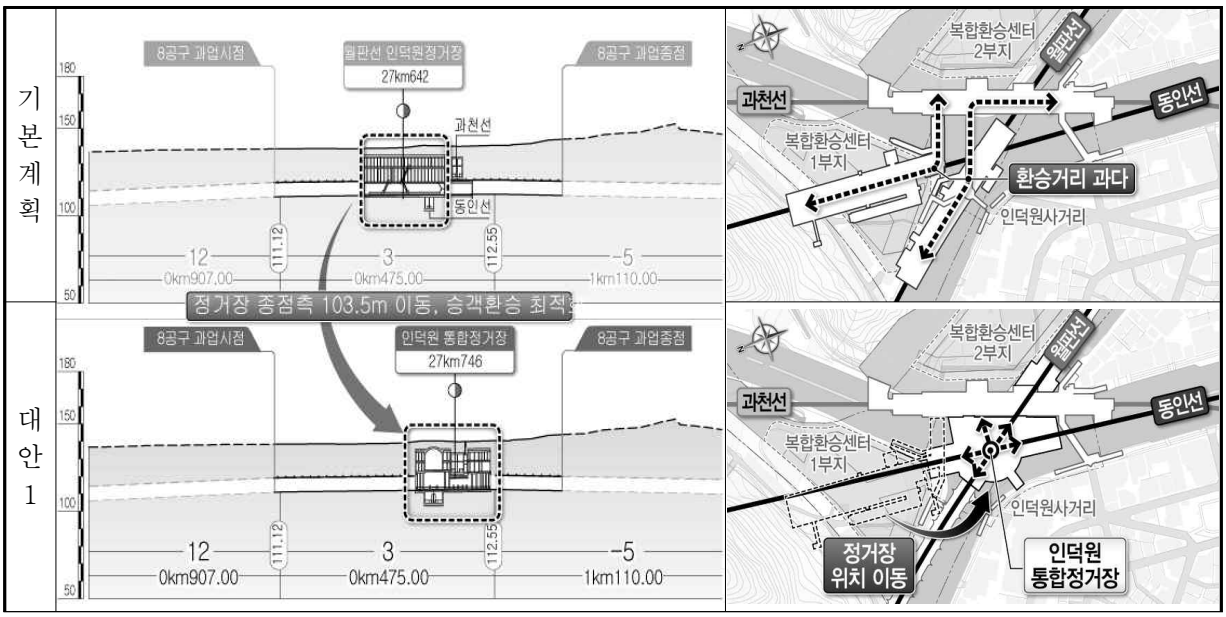

구 분	기본계획	대안 1
선형개요	◦관악대로와 안양판교로 하부를 터널로 통과하는 선형	◦관악대로와 안양판교로 하부를 터널로 통과하는 선형
최급기울기 (‰)	12 (12 → 3 → 5)	12 (12 → 3 → 5)
종곡선(R)	2개소 (7,000m, 10,000m)	2개소 (7,000m, 10,000m)
정거장계획	◦분리정거장, 직선정거장 ◦정거장 T형 환승계획 ◦3개 정거장 환승거리 과다	◦통합정거장 ,직선정거장 ◦정거장 +형 환승계획 ◦3개 정거장 환승거리 최소화
검토결과	◦시・종점부 7공구와 9공구 기울기 연속성을 확보하여 종단선형계획 수립이 용이하며, 지하수 집수계획과 환승거리 측면에서 유리한 대안1을 선정함	

사. 9공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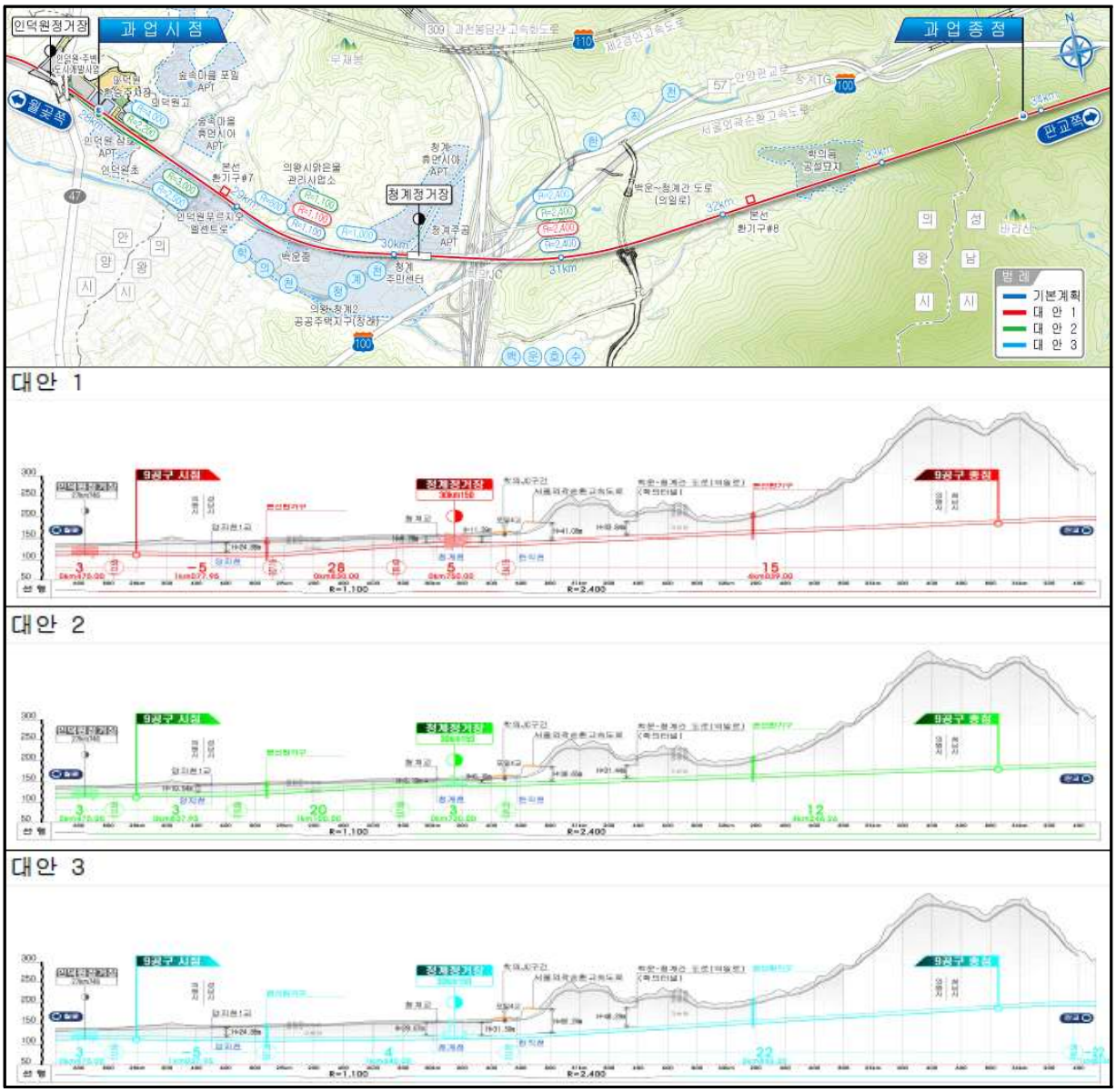

<그림 6-6> 9공구 대안노선 검토

<표 6-10> 9공구 대안검토 결과(평면선형)

구 분		기본계획	대안 1	대안 2	대안 3
노선특성		○주거지 및 상업시설 일부 하부통과 노선	○기본계획 노선 축 일부(정거장축)를 조정하여 설계속도를 향상시키는 노선(인접공구(TK) 선형 유지)	○인접공구(TK) 선형축 변경 및 곡선(2개소) 추가노선	○인접공구 선형변경 없이 과업구간 내 곡선(3개소) 추가 노선(인접공구(TK) 선형 유지)
노선연장		L=5,863m	L=5,861m(감 2m)	L=5,863m(증 0m)	L=5,863m(증 0m)
노반구성	터널	5,721m	5,719m(감 2m)	5,721m(증 0m)	5,721m(증 0m)
	정거장	142m	142m	142m	142m
평면	곡선 개소	2개소(최소 1,100m/최대 2,400m)	2개소(최소 1,100m/최대 2,400m)	4개소(최소 1,100m/최대 3,000m)	5개소(최소 600m/최대 4,000m)
	곡선 반경	1,100m → 2,400m	1,100m → 2,400m	2,200m → 3,000m → 1,100m → 2,400m	4,000m → 2,500m → 600m → 1,000m → 2,400m
종단	기울기(‰)	-5 → 20 → 3 → 25	-5 → 28 → 5 → 15	-5 → 28 → 5 → 15	-5 → 28 → 5 → 15
	개소	4개소(최급기울기 25)	4개소(최급기울기 28)	4개소(최급기울기 28)	4개소(최급기울기 28)
검토결과		○대안2은 시점부에 곡선 2개소를 추가하여 열차운행 및 시공성이 양호하나, 인접공구(TK)내 곡선 접선축 변경이 필요 ○대안3은 인접공구 선형변경 없이 곡선 3개소를 추가하여 시공성이 다소 유리하나, 통과열차 속도제한으로 열차운행 효율성이 불량함 ○대안1은 기본계획 노선을 최대한 준용하여 시공성이 다소 불리하나, 통과열차의 속도 향상이 가능하므로 대안1을 최적안으로 선정함			

< 표6-11 > 9공구 대안검토 결과(종단선형)

구 분		대안 1	대안 2	대안 3
노선개요		○정거장 굴착심도 축소 (3층 정거장) (G.L-F.L=26.32m)	○정거장 굴착심도 최소화 (2층 정거장) (G.L-F.L=20.55m)	○정거장 굴착심도 증대 (터널 정거장) (G.L-F.L=46.28m)
종단	개 소	4개소	4개소	3개소
	기울기(‰)	-5 → 28 → 5 → 15	3 → 20 → 3 → 12	-5 → 4 → 22
	인접공구 영향	-	(T/K8공구 -5‰ → +3‰) (F.L=111.80 → 113.00)	-
	최급 기울기(‰)	28	20	22
종곡선 반경		최소 10,000m (V=200km/h, 부득이한 경우)	최소 10,000m (V=200km/h, 부득이한 경우)	최소 10,000m (V=200km/h, 부득이한 경우)
시공성		○일부 종단상향으로 기본계획 대비 무진동 굴착구간 증대 ○개착정거장 굴착심도 축소로 기본계획 대비 유리	○터널 토피고 축소로 발파굴착이 거의 불가능하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보강 필요 ○정거장 굴착심도 축소로 기본계획 대비 개착구조물 시공성이 유리하나, 터널구간은 시공성 불량	○터널 굴착심도 증가로 발파 굴착 용이 ○정거장 개착 최소화로 시공성이 양호하나, 정거장 대단면 터널(D=36.8m) 적용사례 없으며, 지반조건에 따라 안정성 매우 불리
검토결과		○대안2은 터널 토피고 축소로 발파굴착이 거의 불가능하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보강이 필요하고, 터널구간은 시공성이 불량 ○대안3은 종단계획 하향으로 시공성과 안정성 측면이 가장 유리하나, 시공사례가 없는 대규모 정거장 단면(D=36.8m) 계획으로 안정성이 매우 불리 ○대안1은 종단선형을 설계기준(30‰ 이하) 이내에서 상향 조정하여 굴착심도 축소 등 시공성이 유리함		

아. 10공구

서판교 정거장 이전구간	
서판교 정거장 이후구간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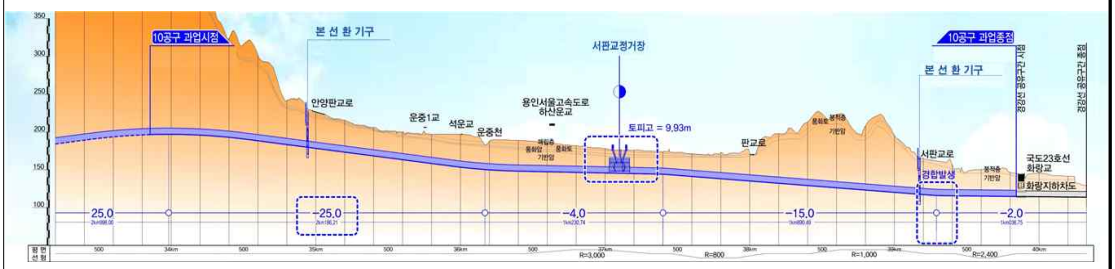
대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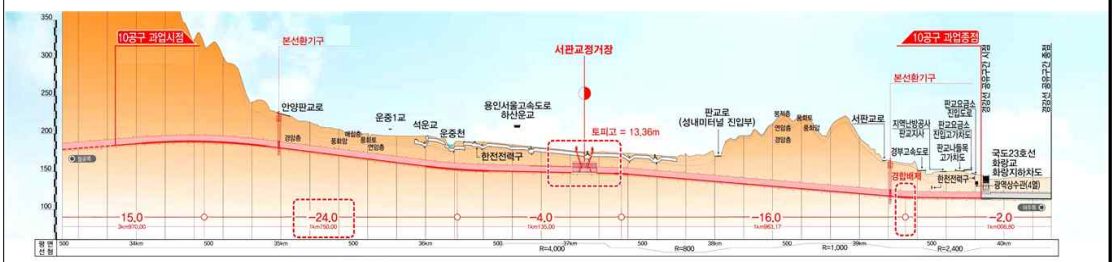

<그림 6-7> 10공구 대안노선 검토

<표 6-12> 10공구 대안검토 결과(평면선형)

구 분		기본계획	대안 1
노선특성		○시점부의 산악지형과 안양판교로 하부를 직선으로 지나 서판교지역의 운중로를 따라 연속되는 4개의 곡선으로 계획 ○정거장이 완화곡선상에 위치, 종점부 종단선형과 경합 발생 ○과업종점부 기존 경강선(운영중)과 지하구조물로 접속	○시점부의 산악지형과 안양판교로 하부를 직선으로 지나 서판교지역의 운중로를 따라 연속되는 4개의 곡선으로 계획 ○정거장이 곡선구간에 위치, 승강장을 원곡선구간에 설치, 종점부 평면선형 경합 해소 ○과업종점부 기존 경강선(운영중)과 지하구조물로 접속
노선연장		L=5,986m	L=5,986m
노반구성	터널	5,845m	5,815m(감 30m)
	정거장	142m	171m
평면	곡선개소	4개소(최소 800m/최대 3,000m)	4개소(최소 800m/최대 4,000m)
	곡선반경	3,000m → 800m → 1,000m → 2,400m	4,000m → 800m → 1,000m → 2,400m
종단	기울기(‰)	25 → -25 → -4 → -15 → -2	15 → -24 → -4 → -16 → -2
	개소	4개소(최급기울기 25)	4개소(최급기울기 24)
시공성		○서판교정거장이 완화곡선구간에 위치하여 시공성 불리	○서판교정거장 구간을 원곡선으로 변경하여 시공성 개선
검토결과		○기본계획은 종점부 종단선형과 경합이 발생하고, 터널 연장이 과다 ○대안1은 종단 경합사항을 해소하고, 터널 연장을 최소화하여 시공성이 유리하므로 최적안으로 선정함	

<표 6-13> 10공구 대안검토 결과(종단선형)

구 분		기본계획	대안 1
노선개요		○최급기울기 25‰로 열차운행 효율이 저하되며, 정거장구간 심도가 과다하고, 종점부 평면선형과 경합 발생 ○정거장 구조물과 한국전력공사 전력구 저촉 발생	○정거장과 한국전력공사 전력구 저촉 해소를 위해 최급기울기 24‰로 조정하고 종점부 평면선형 경합사항 해소 ○정거장 구조물과 한국전력공사 전력구 저촉 해소
종단	개 소	4개소(최급기울기 25)	4개소(최급기울기 24)
	기울기(‰)	25 → -25 → -4 → -15 → -2	15 → -24 → -4 → -16 → -2
	최 급 기울기(‰)	25	24
시공성		○대부분 양호한 연, 경암구간에 노선대가 분포하여 시공성 및 안정성 양호	○대부분 양호한 연, 경암구간에 노선대가 분포하여 시공성 및 안정성 양호
검토결과		○기본계획은 정거장구간 심도가 과다하고, 종점부 평면선형과 경합 발생하며, 정거장 구조물과 전력구 저촉 발생 ○따라서, 종점부 평면선형 경합사항 및 전력구의 저촉을 해소한 대안1을 선정함	

7. 종합평가 및 결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현황,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7.1 자연생태환경분야

가. 동·식물상

현 황

◦육상식물상(현지조사)

-관속식물

•A권역: 1차 70과 212분류군, 2차 82과 245분류군

•B권역: 1차 66과 181분류군, 2차 68과 189분류군

•C권역: 1차 75과 227분류군, 2차 86과 239분류군

•D권역: 1차 73과 229분류군, 2차 80과 247분류군

-생태계교란 생물(식물) 환삼덩굴, 가시박, 미국쑥부쟁이, 가시상추, 단풍잎돼지풀 등 5종 관찰

-현존식생

•사업노선 내 정거장, 본선환기구 등에 분포하는 현존식생은 비산림지역, 아까시나무-상수리나무식재림, 상수리나무군락, 소나무군락, 상수리나무-신갈나무군락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식생보전등급

•사업노선 내 정거장, 본선환기구 등에 분포하는 식생보전등급은 Ⅲ등급, Ⅳ등급, Ⅴ등급 지역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육상동물상(현지조사)

구분	현지조사							
	A권역		B권역		C권역		D권역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포유류	6과 7종	5과 5종	5과 5종	5과 5종	5과 6종	5과 6종	8과 9종	8과 10종
조류	22과 41종	27과 43종	19과 25종	21과 28종	14과 24종	18과 32종	17과 31종	24과 43종
양서·파충류	2과 2종	2과 2종	2과 2종	2과 4종	3과 3종	1과 2종	5과 7종	5과 8종
육상곤충류	35과 74종	34과 64종	32과 64종	31과 63종	35과 68종	34과 71종	42과 94종	49과 116종

◦육수생물상(현지조사)

구분	현지조사											
	Wa.1		Wa.2		Wa.3		Wa.4		Wa.5		Wa.6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어류	1과 1종	1과 1종	2과 3종	2과 3종	3과 4종	2과 3종	2과 6종	1과 4종	3과 4종	2과 4종	2과 4종	1과 2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10과 11종	7과 8종	10과 12종	8과 10종	8과 11종	7과 9종	10과 14종	10과 13종	6과 6종	4과 4종	12과 12종	9과 10종

구분	현지조사											
	Wa.7		Wa.8		Wa.9		Wa.10		Wa.11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어류	2과 2종	2과 2종	1과 3종	1과 4종	1과 3종	1과 2종	1과 1종	1과 1종	2과 2종	2과 2종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7과 10종	6과 9종	9과 13종	8과 11종	11과 13종	10과 11종	8과 11종	8과 9종	12과 14종	11과 13종		

◦법정보호종(현지조사)

-가시연(꽃),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황오리, 붉으배새매,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맹꽁이, 금개구리, 구렁이(청문조사), 도롱뇽(경기도보호야생생물)

영향예측	◦육상식물상 -토공사가 발생하는 터널부, 경사갱, 환기구 등 시설지 내 분포하는 일부 식물상 및 식생의 훼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공사시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며, 사업시행시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의 유입·확산이 예상됨 -공사시 보호수6(회화나무)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월곶1터널, 경사갱, 월곶2터널, 본선환기구#8 내 편입되는 아까시나무-상수리나무식재림, 소나무군락, 상수리나무군락, 상수리나무-신갈나무군락의 훼손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육상동물상 -공사가 예정된 개착구간, 환기구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및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종들의 일시적 서식지 이동 및 회피가 예측됨 ◦육수생물상 -터널부, 경사갱, 환기구 등의 시설이 계획된 지점 내 토공사시 토사에 의한 영향이 예상됨 ◦법정보호종 -사업노선은 대부분 지하로 계획되어 있어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시 확인된 법정보호종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1공구 교량구간 주변지역에서 현지조사시 확인된 맹꽁이에 대한 영향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조류중점조사지역(월곶항, 시흥갯골) -사업노선 시점부 조류중점조사지역(월곶항, 시흥갯골) 내 도래하는 철새들은 해당 지역 및 경작지, 하천을 주 서식처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지역과 인접하여 시행되는 주요 토공사 지점은 도심지 및 산림지역으로 철새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저감방안	◦육상식물상 -공사의 관리·감독 철저 및 불필요한 편입지역 발생 지양 -운영시 환기구 등의 구조물 주변의 생태계교란 생물 주기적인 제거 및 대규모 집단서식 및 번식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후 제거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사업노선 인근 보호수 방진망 설치 -나무장터 등에 게재하거나 지자체 및 지역주민, 조경업자 등에게 무상 공급, 실수요자 수거방안, 나무톱밥 등으로 이용, 펄프용 재료, 가공목 활용 등으로 재활용 ◦육상동물상 -단계적인 공사계획 수립 -저진동·저소음 차량 및 장비를 최대한 투입, 야간공사 지양 등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세륜·세차시설을 운영 ◦육수생물상 -주기적 살수작업 실시, 세륜시설 설치, 토사수로, 임시 침사지 등 설치 ◦법정보호종 -맹꽁이 이주대책 수립 및 비상보전대책 등급별 현장대응 체계 구축

나. 자연환경자산

현 황	◦법정보호종(현지조사) -가시연(꽃),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황오리, 붉으배새매,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 검은머리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맹꽁이, 금개구리, 구렁이(청문조사), 도롱뇽(경기도보호야생생물) ◦야생생물보호구역 -광명시 1개소, 안양시 1개소, 서울시 1개소, 광주시 1개소 위치 ◦사업노선 생태·자연도 2등급 및 3등급 ◦생태·경관보전지역 -서울시 2개소 ◦습지보호지역 -인천시 1개소, 시흥시 1개소 ◦백두대간 보호지역 -관악지맥 관통 ◦도립공원 -안양시 1개소(수리산도립공원), 성남시 1개소(남한산성도립공원) 위치 ◦철새도래지 -인천시 1개소(송도철새도래지), 안양시 1개소(안양천철새도래지)가 위치
영향예측	◦본 사업노선 및 조사지역 일원에는 야생생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약에 지정 등록된 보호·보전지역은 없거나 이격거리가 다소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 및 영향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저감방안	◦공사시 토공사에 의한 비산먼지가 주변지역의 식물 및 육상동물의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공사차량에 덮개 설치, 주기적인 살수를 실시함으로써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계획임 ◦육상동물의 서식지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비의 적정투입으로 소음·진동원 저감, 야생동물의 주 활동시간인 야간에는 작업을 지양하도록 할 계획임 ◦사업노선 외 다른 지역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며, 동·식물상에 제시한 저감방안 등을 준수할 계획임

7.2 대기환경분야

가. 기상 및 대기질

<table>
<tr><td>현 황</td><td>

◦기상현황

기상대명	조사연도	평균기온	평균강수량	평균상대습도	평균풍속
수원	2009~2018	12.7℃	1,340.2㎜	69.3%	1.8㎧

-주풍향 : 서(W), 발생빈도: 12.86%

◦대기질 3~4차 측정결과: 벤젠 항목을 제외한 전항목 환경기준 만족

-PM-10: 17～70㎍/㎥	-PM-2.5: 10～33㎍/㎥
-NO_2: 0.001～0.037ppm	-SO_2: 0.001~0.003ppm
-CO: 0.1~1.0ppm	-O_3: 0.001～0.010ppm
-Pb: 불검출～0.010㎍/㎥	-벤젠: 불검출～5.224㎍/㎥

</td></tr>
<tr><td>영향예측</td><td>

◦공사시

-PM-2.5 연간 기준을 제외한 전지점에서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을 만족

구 분		PM-10(㎍/㎥)	PM-2.5(㎍/㎥)	NO_2(ppb)
예측농도	1시간	-	-	11.03~74.83
	24시간	36.01~60.38	20.00~28.54	11.00~25.59
	연평균	36.00~49.84	20.00~27.24	11.00~25.12

◦운영시(배기구)

-PM-10 연간, PM-2.5 연간기준을 제외한 전지점에서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을 만족

구 분		PM-10(㎍/㎥)	PM-2.5(㎍/㎥)
예측농도	24시간	36.02~59.47	20.02~34.48
	연평균	36.00~50.41	20.00~28.64

</td></tr>
<tr><td>저감방안</td><td>

◦공사시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 살수실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및 미세먼지 예·경보 고려

-이동식 방진망 설치, 토사운반차량에 대한 관리 및 규제

-작업차량 운행속도 20㎞/hr 이하로 제한,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효율적인 작업공정 수립, 아침·야간 작업 지양

-건설장비의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 금지

◦운영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스크린도어 설치

</td></tr>
</table>

나. 온실가스

현 황	◦온실가스 배출현황 -우리나라: 709.1백만tonCO_2(2017년) -철도는 도로분야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시 0.3% 수준에 해당하는 친환경 수송 수단임
영향예측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연료사용량 발생 (총 796L/일) -건설장비 연료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총 3,124.8tonCO_2eq) -상수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총 2.2tonCO_2eq) ◦운영시 -상수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36.81tonCO_2eq)
저감방안	◦공사시 -건설장비의 공회전 금지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특정 건설기계 등 사용제한 -건설자재 및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저감 ◦운영시 -정거장 공용부 에너지절감 계획 •표준소비소율 몰드변압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LED태양광 가로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계획

7.3 수환경분야

가. 수질

현 황	◦하천 현황 -사업노선 주변으로 14개 법정하천(지방 및 국가)이 위치 -사업노선은 하천구간을 지하화로 통과토록 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 현황 -사업노선 일부 구간 안양A, 탄천A 유역에 해당 ◦지표수질 현황 -사업노선 주변 하천수질 조사결과(1~4차 평균) pH 7.0~7.7, BOD 1.6~5.9㎎/L, DO 7.7~9.4㎎/L, COD 3.5~8.6㎎/L, SS 6.6~21.2㎎/L, 총대장균군 1,400~72,000군수/100mL, T-N 2.39~11.97㎎/L, T-P 0.028~0.206㎎/L, TOC 2.0~5.9㎎/L, 그 외 ABS, CN, Cr^{6+}, Cd, Pb, As, Hg, PCB, 유기인 불검출 ◦지하수질 현황 -4차 조사시 GW-2 지점(의왕시)에서 NO_3-N 27.6㎎/L로 농업용수 기준을 다소 초과하였으며, 경작시 살포된 비료의 영향으로 추측됨

영향예측	◦공사시 -지상부 토공사시 우수유출량 0.0026~0.1366㎥/s, 토사유출량 0.054~2.862ton/일, 토사유출 가중농도 218.1~242.4㎎/L -터널공사시 터널폐수 243.85~1,750.09㎥/일 발생 -시추공 방치 시 지표 또는 지중으로부터 오염물질 유입 예상 -공사시 작업인부에 의해 각 공구별 현장사무소에서 약 19㎥/일의 오수 발생 ◦운영시 -정거장 운영시 오수발생량 14.70~59.32㎥/일, BOD부하량 3.822~15.423㎏/일 -정거장 운영시 용수공급량 16.69~67.35㎥/일 -터널구간 지하수 유출에 의한 주변지역의 지하수위 저하, 지반침하 등 예상 -사업노선 대부분 구간을 터널로 계획하고 있어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영향 정도는 미미함 -사업시행 시 정거장 이용인원에 의한 생활계 오염원과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토지계 오염원 변화 발생
저감방안	◦공사시 -우기를 피하여 토공사 실시 및 단계적 공사 시행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우선 설치하고 항시 제 기능을 유지토록 관리 -정거장 개착구간 오탁수는 강제 배수하여 상부 침사지로 유입처리하고 지상부 작업장 주변에 토사유입 방지둑 설치 -지하수위 영향 저감을 위한 쉬트방수 공법 적용 -터널공사시 터널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노선 내 모든 시추공은 폐공조치 후 원상 복구 -현장사무소 설치로 인한 오수는 가급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고, 불가할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적정 처리 ◦운영시 -정거장 운영에 필요한 용수는 지자체별 협의를 통해 기존 급수체계를 수용하여 상수도 공급 -정거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처리계획에 의거 관할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처리하는 방안을 최우선 검토 -사업노선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와 정거장 생활오수는 원칙적으로 분리 집수하여 양질의 지하수를 재이용(정거장 청소용소, 화장실 세정용수, 지상의 가로수 관리수 등) 할 수 있도록 설비시스템 구축

나. 수리・수문

현 황	◦하천 현황 -시흥시에 위치한 장현천과 보통천은 기점으로부터 서쪽으로 유하하여 서해로 흘러 나감 -그 외 하천은 모두 한강의 지류로써 각각 탄천과 안양천을 통해 한강으로 최종 합류 -보통천, 목감천, 가학천 3개 지방하천은 신안산선 공유구간에 포함되는 하천으로 금회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 -사업노선은 하천구간을 지하화로 통과토록 계획 -사업노선이 통과 또는 인접한 소하천은 장곡천(시흥시), 양지천, 덕장천, 한직천, 학현천(이하 의왕시) 총 5개소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사업노선과 인접하거나 관류하는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이 기수립 됨 ◦수문관측소 현황 -1~3공구: 인천관측소 -4~10공구: 수원관측소 ◦강우강도식 적용 -인천관측소: 전대수5차다항식 채택 -수원관측소: 전대수6차다항식 채택
영향예측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에 의한 고빈도 국지성 집중호우시 우수관 통수불량에 의한 지하공간 침수피해 우려
저감방안	◦정거장 출입구 등의 높이는 내수침수위를 고려하여 충분히 높게 결정함으로써 내수침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계획

7.4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현 황

◦사업노선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구 분		계	전	답	구거	임야	대지	도로	공원	유지	기타
시흥시	면 적(㎢)	138.7	20.6	14.8	2.2	37.7	13.8	17.9	4.3	1.8	25.7
	구성비(%)	100.0	14.9	10.7	1.6	27.2	9.9	12.9	3.1	1.3	18.4
광명시	면 적(㎢)	38.5	5.0	2.3	0.3	13.9	7.5	4.3	0.7	0.2	4.3
	구성비(%)	100.0	13.0	6.0	0.8	36.1	19.5	11.2	1.8	0.5	11.1
안양시	면 적(㎢)	58.5	1.0	0.5	0.2	29.5	11.9	5.9	1.1	0.0	8.4
	구성비(%)	100.0	1.7	0.9	0.3	50.4	20.3	10.1	1.9	0.0	14.4
의왕시	면 적(㎢)	54.0	5.3	2.0	0.4	30.7	4.3	4.8	0.4	1.2	4.9
	구성비(%)	100.0	9.8	3.7	0.7	56.9	8.0	8.9	0.7	2.2	9.1
성남시	면 적(㎢)	141.6	5.2	4.5	1.0	62.5	24.0	16.0	8.2	0.4	19.8
	구성비(%)	100.0	3.7	3.2	0.7	44.1	16.9	11.3	5.8	0.3	14.0

<table>
<tr><td>현 황</td><td>◦사업노선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table>
<tr><td colspan="2" rowspan="2">구 분</td><td rowspan="2">용도지역
총계</td><td colspan="6">도시지역</td><td rowspan="2">비도시
지역</td></tr>
<tr><td>합 계</td><td>주거지역</td><td>상업지역</td><td>공업지역</td><td>녹지지역</td><td>미지정</td></tr>
<tr><td rowspan="2">시흥시</td><td>면 적(㎢)</td><td>135.06</td><td>135.06</td><td>22.75</td><td>1.75</td><td>11.07</td><td>99.50</td><td>-</td><td>-</td></tr>
<tr><td>구성비(%)</td><td>100.0</td><td>100.0</td><td>16.8</td><td>1.3</td><td>8.2</td><td>73.7</td><td>-</td><td>-</td></tr>
<tr><td rowspan="2">광명시</td><td>면 적(㎢)</td><td>38.51</td><td>38.51</td><td>9.33</td><td>1.52</td><td>0.44</td><td>27.21</td><td>-</td><td>-</td></tr>
<tr><td>구성비(%)</td><td>100.0</td><td>100.0</td><td>24.2</td><td>3.9</td><td>1.1</td><td>70.7</td><td>-</td><td>-</td></tr>
<tr><td rowspan="2">안양시</td><td>면 적(㎢)</td><td>58.48</td><td>58.48</td><td>15.14</td><td>2.21</td><td>3.23</td><td>37.90</td><td>-</td><td>-</td></tr>
<tr><td>구성비(%)</td><td>100.0</td><td>100.0</td><td>25.9</td><td>3.8</td><td>5.5</td><td>64.8</td><td>-</td><td>-</td></tr>
<tr><td rowspan="2">의왕시</td><td>면 적(㎢)</td><td>53.99</td><td>53.99</td><td>6.39</td><td>0.28</td><td>1.13</td><td>46.19</td><td>-</td><td>-</td></tr>
<tr><td>구성비(%)</td><td>100.0</td><td>100.0</td><td>11.8</td><td>0.5</td><td>2.1</td><td>85.6</td><td>-</td><td>-</td></tr>
<tr><td rowspan="2">성남시</td><td>면 적(㎢)</td><td>141.82</td><td>141.82</td><td>29.62</td><td>5.11</td><td>1.79</td><td>105.20</td><td>0.10</td><td>-</td></tr>
<tr><td>구성비(%)</td><td>100.0</td><td>100.0</td><td>20.9</td><td>3.6</td><td>1.3</td><td>74.1</td><td>0.1</td><td>-</td></tr>
</table></td></tr>
<tr><td>영향예측</td><td>◦주요 시설물 설치 계획
-정거장: 총 9개소(신설 8개소, 개량 1개소)
-본선환기구: 총 10개소
◦편입용지 및 지장물 발생</td></tr>
<tr><td>저감방안</td><td>◦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대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상토록 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최소화</td></tr>
</table>

나. 토양

<table>
<tr><td>현 황</td><td>◦토양오염도 현황
-현지조사: 조사결과 평균 Cr^{6+} 불검출~0.15㎎/㎏, Cd 0.25~0.89㎎/㎏, Cu 9.35~22.55㎎/㎏, Pb 21.33~31.25㎎/㎏, As 2.48~3.37㎎/㎏, Hg 불검출~0.28㎎/㎏, 크실렌 불검출~0.40㎎/㎏, 그 외 항목 불검출로 전 지점 토양오염우려기준 만족
-문헌조사: 2018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5개 행정구역에서 총 9개 조사지점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염지역은 사업노선으로부터 최소 1.2㎞~최대 6.4㎞ 가량 이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사업노선은 대부분 기존도로를 따라 지하화로 계획되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청계정거장 예정지역 인근으로 송유관이 지나가는 것으로 조사됨
-실시설계 시 지장물 조사를 통한 지자체별 송유관 매설위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및 영향예측 실시 예정</td></tr>
</table>

영향예측	◦공사시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폐유 발생으로 무단투기 및 관리 소홀로 인한 누유시 토양오염 유발 -작업인부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및 분뇨 무단투기 시 토양오염 우려 -발파시 화약 잔류물에 의한 토양오염 야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예상 ◦운영시 -정거장 이용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분뇨의 불법 방치·방류시 토양오염 발생
저감방안	◦공사시 -투입장비의 정비는 지정 정비업소에서 실시 -현장사무소 인근에 폐유보관소 설치, 전문처리업자에게 최종 위탁처리 -공사지역 내 분리수거함,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발파전 시험발파를 통해 화약사용을 최소화하고, 화약류의 취급·관리 철저 -토양오염 발생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실시, 오염토양 정화조치 시행 ◦운영시 -정거장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배출 성상에 따른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별 폐기물처리계획에 준하여 이동·처리

다. 지형·지질

현 황	◦지형·지질 -본 사업노선은 경기편마암복합체의 일부로서 주로 편마암류, 그 후기에 관입한 화성암류, 충적층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사업노선은 관악지맥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사업노선에는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및 특이지형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영향예측	◦1공구 지상구간(교량구간 및 토공구간) 및 개착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본선이 지하로 계획되어 있으며, 개착 및 정거장 구간 등의 경우, 공사시에만 일시적인 지형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시행 전·후 지형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토공사로 인하여 토공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공사시 일부 토공 및 개착구간 등에 강우시 토사유출이 예상됨
저감방안	◦공사시 발생하는 굴착토 등의 사토는 되메움토사로 적극 활용하고 유용한 잔여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과 연계하여 반출 처리할 계획임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를 설치할 계획임 ◦지반조건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굴착방법을 선정 ◦공사 및 운영 중 예상치 못한 지반거동 발생 등에 대비하여 계측 계획 수립

7.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현 황	◦생활폐기물 발생량: 시흥시 289.8톤/일, 광명시 236.2톤/일 안양시 309.7톤/일, 의왕시 100.5톤/일, 성남시 854.9톤/일 ◦건설폐기물 발생량: 시흥시 2,244.3톤/일, 광명시 2,925.7톤/일 안양시 2,381.7톤/일, 의왕시 1,176.1톤/일, 성남시 533.2톤/일 ◦분뇨 1인당 발생량: 시흥시 1인당 0.50L/인·일, 광명시 1인당 0.38L/인·일, 안양시 1인당 0.47L/인·일, 의왕시 1인당 0.09L/인·일, 성남시 1인당 0.44L/인·일 ◦매립시설: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에는 운영중인 매립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남시에 매립시설 1개소 운영 ◦소각시설: 시흥시, 의왕시에는 소각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광명시, 안양시1개소, 성남시 2개소의 소각시설 운영 ◦분뇨처리시설: 의왕시에는 운영중인 매립시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성남시에 각각 1개소의 분뇨처리시설 운영
영향예측	◦공사시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98.6㎏/일, 분뇨 55.1L/일 발생 -지장물 철거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나, 본 사업구간은 대부분 지하구간으로 계획되어 지상 지장물 철거로 인한 건설폐기물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 257.3L/일 발생 -수목훼손에 의한 임목폐기물은 총 151.6톤 발생 -터널폐수처리시설 운영시 각 공구 구간별 슬러지 1.4~9.8㎥/일 발생 ◦운영시 -정거장 이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1.9854㎏/일 발생 -정거장 근무인원에 의한 생활폐기물 0.0007㎏/일 발생
저감방안	◦공사시 -공사장 및 현장사무소 주변 분리수거함 및 간이화장실 설치 및 적정처리 -건설폐기물 처리시 분리발주 및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지정폐기물 처리시 폐유보관소 설치 및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터널공사시 폐수 슬러지는 성분 분석 후 적정 처리업체 위탁처리 ◦운영시 -역사 내·외부 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및 재활용 시행 -재활용 외 폐기물은 각 지자체별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적정 처리

나. 소음·진동

현 황	◦소음·진동 현황 -환경영향평가시 소음 • N-1,4,5,6(도로변지역): 주간소음도 56.6～61.7dB(A), 야간소음도: 48.3～60.0dB(A)로 "가 및 "나"지역(주간 65.0dB(A), 야간 55.0dB(A)) 환경기준 초과 • N-2(일반지역): 주간소음도 56.0dB(A), 야간소음도: 50.7dB(A)로 "가 및 "나"지역(주간 65.0dB(A), 야간 55.0dB(A)) 환경기준 초과 • N-3(일반지역): 주간소음도 50.9dB(A), 야간소음도: 48.8dB(A)로 "가 및 "나"지역(주간 65.0dB(A), 야간 55.0dB(A)) 환경기준만족
영향예측	◦공사시 -건설장비 소음·진동 • 개착구간(토공): 56.8~99.3dB(A)로 35개 지역에서 환경목표기준 초과, 19.3~79.4dB(V)로 9개 지역에서 환경목표기준 초과 • 개착구간(파일 항타): 54.4~75.7dB(A)로 2개 지역에서 환경목표기준 초과, 38.8~54.8dB(V)로 환경목표기준 만족 -발파시 소음·진동 • 터널구간: 0.072～1.113cm/s로 41개 지역에서 환경목표기준 초과 ◦운영시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 예측결과 주간 31.0~68.2dB(A), 야간 30.0~67.3dB(A)로 3개 지역에서 환경목표기준 만족
저감방안	◦공사시 -건설장비 소음·진동 • 주간(08:00～18:00) 작업 실시, 공사차량의 주행속도 20㎞/hr 이내 제한 • 공종별 장비의 합리적인 투입 및 저소음·저진동 장비 선택 • 개착구간(토공): 가설방음판넬 설치, 건설장비 분산 투입, 이동식 방음시설 설치 • 개착구간(파일 인입): 지반 굴착시 트리콘 비트 사용, 파일 인입시 타격부 밀폐, 항타시 고무 받침대 사용, 작업시간 조정(1일 6시간 이하) 등 -발파시 소음·진동 • 실규모 시험발파 시행 및 무진동공법으로 변경 • 완전 전색 실시 및 지연시차를 활용한 지발당 장약량 분산 • 전색효과가 좋은 전색물 사용, 역기폭 실시 • 발파매트, 개착부 상단 차단막,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3중 방음시설, 가설방음판넬 등 설치 • 회귀분석에 근거한 거리별 허용 지발당 장약량을 준수 • 뇌관배열시 각각의 장약공마다 기폭시차가 다른 지발뇌관을 사용 ◦운영시 -레일 장대화, 레일연마, 분기기 개량 등을 통해 진동영향 최소화

다. 위락·경관

현 황	◦위락시설 현황 -공원: 시흥시 194개소, 광명시 79개소, 안양시 129개소, 의왕시 60개소, 성남시 195개소 -문화공간: 시흥시 20개소, 광명시 17개소, 안양시 20개소, 의왕시 8개소, 성남시 49개소 -체육시설: 시흥시 672개소, 광명시 272개소, 안양시 714개소, 의왕시 151개소, 성남시 1,312개소 ◦경관자원 현황 -보호지역: 자연공원(남한산성도립공원, 수리산도립공원), 습지보호지역(시흥갯벌) -자연경관: 사업노선 주변으로 본향산, 성채산, 수리산, 삼성산, 바라산, 백운산, 청계산 등이 위치 -수경관: 장현천(지방하천), 안양천(지방하천), 수암천(지방하천), 청계천(지방하천), 운중천(지방하천) 등 -생활경관: 시가지경관, 공장밀집지역,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선형경관: 시점부 수인선 및 종점부 인근 경강선, 신분당선으로 연결되어있으며, 주변으로 지하철 1호선, 4호선 등이 위치하고, 영동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이 위치
영향예측	◦도시철도 건설사업 특성상 지상노출 구조물의 경관변화가 현저한 지점(11지점) 조망점 선정후 경관변화를 분석함 ◦계획 구조물은 주변 구조물에 비해 규모가 작으며 크게 부각되지 않으므로 경관변화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됨
저감방안	◦본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노선은 1공구를 제외하고 모두 지하구간으로 설계되어 있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외부출입구, 환기구, 엘리베이터 등 외부로 노출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디자인계획, 색체계획 등으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하고 기존 건물과 유사한 스카이라인을 확보하여 경관영향을 저감토록 계획하였음

라. 전파장해

현 황	◦전파장해: 송전선로, 지형특성, 기상조건 등에 의해서 각종 전파사용기기의 전파수신이 일시적,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거나 불량해지는 형상 ◦전자파: 전계와 자계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파동으로서 공간을 광속도로 전파되는 현상
영향예측	◦국철 운영시 발생하는 전자파는 9.84mG로 국제방사선보호위원회 권장제한치 1,000mG와 비교시 매우 낮은 수치로 인체영향 적음 ◦전기철도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주변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저감방안	◦TV수신장해 및 전파수신상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파장해 발생시 수신시설 설치, 이설, 개량 등의 저감대책 수립·시행

마. 일조장해

현 황	◦사업노선 인근 수원기상대 일조시간 -총 일조시간: 2,346.5hr -계절별 일조시간: 봄 680.6hr, 여름 543.4hr, 가을 583.6hr, 겨울 538.9hr
영향예측	◦운영시 -구조물(교량) 설치로 인한 일조장해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노선 인한 주변 농경지 및 정온시설에 대한 일조장해를 검토하기 위하여 일조분석 프로그램 (Sunlight Ver.2.0)를 이용하여 일영변화를 분석하였음 -예측결과, 정온시설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농경지에 교량의 일영이 발생하여 농작물 생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저감방안	◦사업시행에 따른 일조피해 영향이 예상되는 대상은 사업노선에 편입하거나 민원인과 협의하여 피해액을 보상하는 등의 직·간접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임

7.6 사회·경제환경분야

가. 인구·주거·산업

현 황	◦인구 현황 -시흥시 483,327인, 광명시 333,114인, 안양시 584,239인, 의왕시 155,084인, 성남시 972,280인 ◦주택 현황 -시흥시 182,182호, 광명시 112,657호, 안양시 206,474호, 의왕시 47,471호, 성남시 344,591호 ◦사업체 현황 -시흥시 41,471개, 광명시 18,990개, 안양시 44,826개, 의왕시 8,959개, 성남시 65,511개
영향예측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주거 및 산업형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간 교통시간 단축 및 이용객 증대로 인해 전체적인 유동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저감방안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피해 발생시 대책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의왕시, 성남시	
사업자	국가철도공단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210㎜×297㎜[백상지 80g/㎡]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042호

-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 온라인 구민참여 토론회 참가자 모집

아동·청소년과 부모, 아동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방향과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온라인 구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0월 16일

남 동 구 청 장

□ 온라인 구민참여 토론회 개요

- ❍ 일 시: 2020. 11. 21.(토) 14:00~17:00
- ❍ 방 법: 비대면 그룹별 토론 - 화상회의 앱 ‘줌(ZOOM) 활용
- ❍ 인 원: 110명(아동·청소년 80, 부모 20, 아동관계자 10)
- ❍ 주 제: 함께 만드는 아동친화도시 남동구
- ❍ 내 용: 아동친화도 6대 영역별 의제 모둠토의(조별토론)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환경	▸ 가정환경

□ 참가자 신청·접수

- ❍ 모집기간: 2020. 10. 26(월) ~ 11. 6.(금) (11일간)

○ 신청자격

구 분	신청자격
아동·청소년	남동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만18세 미만 아동(또는 해당연령의 학교 밖 아동)
부 모	남동구 거주자로서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 (영유아 부모 포함)
아동관계자	남동구 소재 학교 및 아동관련 시설, 기관 종사자 또는 아동권리옹호자

○ 모집인원

구 분	대 상	모집인원	비 고
계		110명	
아동·청소년 (80명)	초등(4~6학년)	23명	※ 선발비율은 지원현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중등(1~3학년)	23명	
	고등(1~3학년)	23명	
	소수집단 아동 (학교 밖, 생활시설, 장애, 다문화 등)	11명	
부 모 (20명)	미취학	5명	〃
	초등	5명	
	중등	5명	
	고등	5명	
아동관계자 (10명)	교육기관 관계자	4명	〃
	아동시설 관계자	4명	
	아동권리 옹호자	2명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이메일 중 택일

▶ 붙임 신청서식(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 방문신청 : 남동구 아동복지과 아동친화팀

※ 방문신청의 경우 근무시간 내(월~금 09:00 ~ 18:00) 방문

- 팩 스 : 032-453-5879

- 이메일 : iou7000@korea.kr

○ 혜 택 : 자원봉사시간 3시간 인정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가입 필수

○ 선발방법: 선착순

- 단 소수집단 아동 기관추천자 우선 선발

○ 선발발표: 2020. 11. 10.(화) 개별 통보(휴대폰 문자 전송 예정)

○ 문 의 처: 남동구 아동복지과 아동친화팀(☎032-453-5872)

-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

온라인 구민참여 토론회 참가신청서

【접수번호 : 】

구 분	□ 아동·청소년 □ 부 모 □ 아동관계자				
성 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연 락 처	자 택 사무실	-	휴대폰	- -	
E-mail					
관심분야 (2개선택)	( )놀이와 여가 ( )참여와 시민의식 ( )안전과 보호 ( )보건과 사회서비스 ( )교육환경 ( )가정환경				
	※ 참여자 및 조별 현황에 따라 조별구성이 임의대로 배정될수 있습니다.				
[구분 작성표]					
아동·청소년	□ 초 등(4~6학년) □ 중 등 □ 고 등 □ 기 타( )				
	→ 학교명 : 학년 :				
부 모	자녀연령대	□ 미취학 □ 초등 □ 중등 □ 고등			
아동관계자	소속기관/ 시설명		직위		

위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온라인 구민참여 토론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및 촬영 등의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본 참가신청서 기재사항)의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 허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항목: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소속, 직위, 주소, 이메일 등
- 수집 및 이용목적 : 구민참여 원탁토론회 참석 확인 및 참가자 명단 관리
- 보유기간: **5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영상 · 사진촬영 및 음성녹음의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한 동의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 허용)에 의거하여 온라인토론회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상 · 사진촬영 및 음성녹음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토론회 기록, 홍보 등 목적
- 수집항목: 영상, 사진, 녹취파일 상 개인정보
- 제공받는자: 남동구청, 경기지방행정발전연구원
- 보유기간: **5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 제공목적: 참가자 조별 편성, 토론회 진행 및 기록
- 제공항목: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소속, 직위, 주소, 이메일, 영상, 사진, 녹취파일 상 개인정보 등
- 제공받는자: **경기지방행정발전연구원**
- 보유기간: **5년**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체크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14세 미만의 경우 자신의 정보제공을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 및 법적대리인(보호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행사 참가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월 일

본 인 성명 : (서명)
법정대리인 (만14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성명 : (서명)

남동구청장 귀하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065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0.10.21. ~ 2020.11.4.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78나7183외 4대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

2020년 10월 21일

남 동 구 청 장

강제처리 대상차량 및 이해관계인 내역

일련번호	차량등록번호	차 명	성 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 소	보관장소 /보관일	압류(저당)권설정내역
2020-00245	78나7183	그랜드 스타렉스(GRAND STAREX)	조*규 /6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면 양**길 2**-3*	㈜서울 폐차사업소 /2020.7.30.	충남 아산시 (환경보전과, 민원봉사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지사 충남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위생과, 서북구 산업교통과, 동남구 세무과, 환경정책과) 천안동남경찰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2020-00318	34부2902	Passat 2.0 TDI	방*배 /65****	충청남도 당진시 천**길 1*-9*, **5호(읍*동, 금****빌)	㈜서울 폐차사업소 /2020.8.12.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 인천 중구 (교통운수과) 충남 당진시 (세무과, 환경정책과, 교통과) 당진경찰서 서울 중구 (주차관리과) 인천 미추홀구 (자동차관리과) 서울 구로구 (사회복지과) 인천 남동구 (노인장애인과) 인천 연수구 (노인장애인과, 차량민원과) 서울양천경찰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생활민원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서울 강서구 (주차관리과) 서울 강북구 (주차관리과) ㈜에이치케이저축은행
2020-00329	39누7869	무쏘	김*례 /34****	전라남도 나주시 가**길 3*, **4동 **6호(용*동, 용*****트)	㈜서울 폐차사업소 /2020.8.14.	경기 부천시 (원미구 경제교통과) 전남 나주시 (경제교통과, 환경관리과) 전남 완도군 (경제산업과)
2020-00332	49모7073	마티즈	임*식 /81****	경상남도 거제시 아**길 1*, **7호(아*동)	기전산업㈜ 폐차사업소 /2020.8.12.	경남 김해시 (납세과, 차량등록사업소) 김새서부경찰서 경남 거제시 (차량등록과, 세무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
2020-00333	73보1392	카스타	이*상 /6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길 *2(간*동)	기전산업㈜ 폐차사업소 /2020.8.12.	인천 남동구 (세입징수과, 자동차관리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073호

남동구청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동구청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상위 조례 제정에 따라 불필요한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의 훈련일수를 현실화하여, 지도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유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체육활동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에 따른 규칙 명칭 개정

❍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

- 現 제2조(설치 및 운영), 제3조(구성), 제4조(직무), 제17조(위탁운영・관리)

❍ 꿈나무스포츠단 부단장 직위 관련 항목 삭제: (現 제8조제1항)

❍ 감독 및 코치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 일수 확대: (안 제4조)

- 기존 20일 이내 → 23일 이내

❍ 꿈나무스포츠단 대회참가 등 실제 훈련일수 반영: (안 제8조제1항)

- 주 4일 이내 → 주 5일 이내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남동구청장(참조: 체육진흥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체육진흥과(만수동, 남동구청) ☎ 453-2153 FAX 453-2159)
- 남동구 홈페이지 (http://www.namdong.go.kr/main/news/legislation.jsp):입법예고

4. 참고사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제3조 및 제8조제1항

❍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포 예정)

남동구청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20년 월 일
제 출 자: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상위 조례 제정에 따라 불필요한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의 훈련일수를 현실화하여,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도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관내 유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체육활동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에 따른 규칙 명칭 개정

○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 규정 삭제

- 現 제2조(설치 및 운영), 제3조(구성), 제4조(직무), 제17조(위탁운영·관리)

○ 꿈나무스포츠단 부단장 직위 관련 항목 삭제: (現 제8조제1항)

○ 감독 및 코치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지급 일수 확대: (안 제4조)

- 기존 20일 이내 → 23일 이내

○ 꿈나무스포츠단 대회참가 등 실제 훈련일수 반영: (안 제8조제1항)

- 주 4일 이내 → 주 5일 이내

□ 본 문: “별첨”

□ 참고자료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9호, 제3조 및 제8조제1항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포 예정)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청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남동구청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①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이하 “스포츠단”이라 한다)의 감독 및 코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 또는 종목별 연맹 및 협회 등에서 규정하는 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② 감독 및 코치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③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이력서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한다.

④ 임용된 감독·코치 및 선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용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감독, 코치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3조(면직) ① 단장은 감독이나 코치가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스포츠단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면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감독이나 코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

1.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2. 선수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스포츠단 운영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 지도·감독할 수 없는 경우
5. 선수단원 모집·선발 또는 운영 시 뇌물수수 등 지도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6. 민·형사상 책임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수당 등의 지급) ① 감독의 수당은 연습 또는 대회 참가 시 1일 15만 원으로 정하되, 월 23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② 코치의 수당은 연습 또는 대회 참가 시 1일 13만 원으로 정하되, 월 23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선수의 모집·선발) ① 선수의 모집대상은 남동구에 거주하고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세부 모집요건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남동구

리틀야구단은 한국리틀야구연맹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수의 자격을 정한다.

② 스포츠단에 입단을 희망하는 사람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단의 정기모집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체력, 소질 등 감독이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⑤ 모집일 현재 학교 내 운동부나 다른 운동클럽 등에 가입된 선수는 해당 선수의 운동부 또는 소속클럽의 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선수 탈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은 선수를 탈퇴시킬 수 있다.

1. 주 3회 이상 무단으로 훈련에 불응한 경우
2. 감독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비행・탈선 등으로 스포츠단의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탈퇴 처리된 선수는 재입단 할 수 없다.

제7조(서약) 감독 및 코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선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입단각서를 각각 입단 시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선수훈련 및 대회참가 등) ① 선수의 훈련은 감독이 단장의 승인을 받아 주 5일 이내로 실시한다. 다만, 대회 참가 시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특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독은 선수들의 기술연마와 스포츠단 간의 교류를 위하여 각종 대회에 참

가하거나 전지훈련(캠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독은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실시 15일 전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① 단장은 매년 의무적으로 선수단원의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선수단원은 훈련이나 대회출전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해에 대하여는 보험사의 약관에 따른다.

제10조(운영경비) 스포츠단 운영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인용품은 본인이 부담한다.

1. 운동용품 구입비
2. 선수훈련지원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후원회 구성 등) 스포츠단의 발전과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회 등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자율적으로 한다.

제12조(경력증명서 발급) 단장은 입단 중인 감독, 코치, 선수 또는 탈퇴한 선수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호(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감독, 코치, 선수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입단한 것으로 보며, 감독, 코치에 대한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 원 서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지원종목:

본인은「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의 (감독, 코치)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인)

남동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이력서, 경력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지도자 선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지도자 선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지도자 선발	서류 접수일로부터 1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지도자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직업, 학력, 주요활동 경력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지도자 선발	서류 접수일로부터 1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지도자 선발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지도자 선발	서류 접수일로부터 1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지도자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정신질환 여부, 장애여부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지도자 선발	서류 접수일로부터 1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지도자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심사자	선발 심사	성명, 생년월일	서류 접수일로부터 1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위의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지도자 선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상기자는 (축구, 야구) 체육지도자 자격이 있는 자로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지도력이 탁월하여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축구, 야구) 감독, 코치로 추천합니다.

추천인: ( )협회장 (인)

남동구청장 귀하

※ 첨부: 이력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장

소 속:

직 위:

성 명: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 (감독, 코치)으로 임용함.

20 . . .

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전 면)

신 분 증
사 진
No.
성명:
남동구청장

(후 면)

소 속: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20 . . . 남동구청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세로) 63×90㎜

[별지 제5호서식]

꿈나무 스포츠단 (　　) 감독, 코치 인사기록카드

부 서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 명 (한글)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생활근거지	
		. . .	주소			

병역관계	해당없음	미 필			복 무							
		역종	체격등위	미필사유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영년월일	전역년월일	MOS

개인신상관계	신체사항	신 장	체 중	시 력	색 맹	혈액형	건강상태	종 교	취 미	특 기
		cm	kg	좌( ) 우( )						

재산사항	동 산	부 동 산	가 옥	부 업 명	부업일수	재산총액

정당사회단체	단체명	직 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단체명	직 책	가입년월일	탈퇴년월일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직장・직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직업・직장・직위

학력	기 간		학교명 및 전공과목	학 위	기 간		학교명및전공과목	학 위

전력	기 간		근 무 처	학 위	기 간		근 무 처	학 위

임용사항	임용년월일	직 위	확 인	퇴직년월일	직 위	확 인

호봉	년 월 일	호봉	근무일수	확 인	년 월 일	호봉	근무일수	확 인

임용전 경기실적	기 간	대 회 명	장 소	전 적	기 간	대 회 명	장 소	전 적

임용후 경기실적	기 간	대 회 명	장 소	전 적	기 간	대 회 명	장 소	전 적

[별지 제6호서식]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입단신청서

학생	종 목: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 여 ( )	학교명: 초등학교 ( )학년 ( )반 ( )번
	신체사항: 신장 ㎝, 체중 ㎏	
	전자우편(E-mail):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락처: 자택 ( ), 휴대폰 ( )	
	전자우편(E-mail):	
	학생과의 관계:	

※ 첨부서류: 주민등록 등본 1부(개인정보제공 미동의 시)

상기 학생의「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가입을 신청(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인)

보 호 자: (인)

남동구청장 귀하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입단 및 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모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입단 및 활동	서류 접수일로부터 1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입단 및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직업, 학력, 주요활동 경력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입단 및 활동	서류 접수일로부터 1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입단 및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입단 및 활동	서류 접수일로부터 1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입단 및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보유기간
정신질환 여부, 장애여부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입단 및 활동	서류 접수일로부터 1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입단 및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해당 종목 감독, 코치	꿈나무스포츠단 활동	성명, 생년월일	서류 접수일로부터 1년 문서보존기간 만료 시 파기

※ 위의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입단 및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중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의 (감독, 코치)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분에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직 위: (종 목) (감독, 코치)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입 단 각 서

○ 성 명: ○ 생년월일:

○ 학 교 명: ○ 학 년:

○ 주 소: ○ 종 목:

상기 본인은「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에 입단하여 활동함에 있어 아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입단에 동의합니다.

1. 주 3회 이상 무단으로 훈련에 불응한 경우나 감독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비행・탈선 등으로「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의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탈퇴시킬 수 있다.
2. 선수단원은 훈련이나 대회출전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해에 대하여는 보험사(구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의 약관에 의한다.
3. 선수의 유니폼 및 운동화 등 개인용품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한다.

년 월 일

학 생: (서명 또는 날인)

보호자(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선수와의 관계:

주 소:

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경력 사항	소 속				
	직 명				
	경력기간		. . .부터 . . .까지(년 월)		
용도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청장

[참고자료]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생활체육의 육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권장·보호 및 육성한다.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활동의 지원
2.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3.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지원, 참가
4. 남동구청 꿈나무 스포츠단 운영
5. 그 밖에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생활체육단체가 전국대회의 생활체육행사에 인천광역시 대표팀으로 참가할 경우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한 종목당 연 1회에 한한다.

④ 남동구청 꿈나무 스포츠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現 운영 규칙

남동구청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정) 2011.04.22 규칙 제 776호
(일부개정) 2012.12.31 규칙 제814호
(일부개정) 2015.07.10 규칙 제890호
(일부개정) 2019.11.15 규칙 제101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남동구청 꿈나무스포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남동구청 꿈나무스포츠단(이하 “스포츠단”이라 한다)에 두는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5.)

1. 축구
2. 야구
3.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개정 2019. 11. 15.)

② 종목별 꿈나무스포츠단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구 : 남동구청 유소년축구단(이하 “축구단”이라 한다) (개정 2019. 11. 15.)
2. 야구 : 남동구청 리틀야구단(이하 “야구단”이라 한다) (개정 2019. 11.

15.)

3. 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종목 : 남동구청 꿈나무 ○○단 (개정 2019. 11. 15.)

③ 스포츠단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에 두고 감독, 코치는 체육업무담당 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3조(구성) ① 스포츠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및 선수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1. 15.)

②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남동구체육회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종목별 선수단원은 감독 1명과 코치 2명 및 40명 이내의 선수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1. 15.)

제4조(직무) ① 단장은 스포츠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지휘・감독하고, 선수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2. 감독은 선수의 발굴, 선발 및 지도, 경기운영 등의 책임을 진다.

3. 감독은 선수의 출석상황, 훈련내용, 특이사항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고 그 기록을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

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 ① 감독 및 코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 또는 종목별 연맹 및 협회 등에서 규정하는 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개정 2019. 11. 15.)

② 감독 및 코치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용 할 수 있다.

③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이력서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한다.

④ 임용된 감독·코치 및 선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용장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 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감독, 코치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제6조(면직) ① 단장은 감독이나 코치가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스포츠단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면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감독이나 코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는 경우
2. 선수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스포츠단 운영에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 지도·감독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감독 등의 임면) 감독·코치의 임용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면직에 대하여는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8조(수당 등의 지급) ① 단장, 부단장 및 선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감독의 수당은 연습시 1일 15만원으로 정하되, 월 2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코치의 수당은 연습시 1일 13만원으로 정하되, 월 2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선수의 모집·선발) ① 선수의 모집대상은 남동구에 거주하고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세부 모집요건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야구단은 한국리틀야구연맹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수의 자격을 정한다. (단서신설 2012. 12. 31.)(개정 2019. 11. 15.)

② 스포츠단에 입단을 희망하는 사람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스포츠단의 정기모집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체력, 소질 등 감독이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⑤ 모집일 현재 학교 내 운동부나 다른 운동클럽 등에 가입된 선수는 해당

선수의 운동부 또는 소속클럽의 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선수의 탈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은 선수를 탈퇴시킬 수 있다.

1. 주 3회 이상 무단으로 훈련에 불응한 경우
2.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비행·탈선 등으로 스포츠단의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탈퇴 처리된 선수는 재입단 할 수 없다.

제11조(서약) 감독 및 코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선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입단각서를 각각 입단시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선수훈련 및 대회참가 등) ① 선수의 훈련은 감독이 단장의 승인을 받아 주 4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단장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은 선수들의 기술연마와 스포츠단 간의 교류를 위하여 각종 대회에 참가하거나 전지훈련(캠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독은 대회참가 및 전지훈련 실시 15일전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① 단장은 매년 의무적으로 선수단원을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선수단원은 훈련이나 대회출전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해에 대하여는 보험사의 약관을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14조(실비보상) 스포츠단 운영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비

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인용품은 본인이 부담한다. (단서신설 2019. 11. 15.)

1. 상해보험료
2. 운동용품 구입비
3. 선수훈련지원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5조 삭제 <2019. 11. 15.>

제16조(후원회 구성 등) 스포츠단의 발전과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회 등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자율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5.]

제17조(위탁운영・관리) ① 스포츠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위탁받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 경기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제18조(경력증명서 발급) 단장은 입단 중인 감독, 코치, 선수 또는 탈퇴한 선수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2011. 4. 22. 규칙 제77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감독과 코치는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 12. 31. 규칙 제8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15호, 2019.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운영 조례(공포 예정)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소년의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이하 “스포츠단” 이라 한다)에 두는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구
2. 야구

② 종목별 스포츠단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구 : 남동구 유소년축구단(이하 “축구단” 이라 한다)
2. 야구 : 남동구 리틀야구단(이하 “야구단” 이라 한다)

③ 스포츠단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에 두고, 감독·코치는 체육업무담당 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3조(구성) ① 스포츠단은 단장 1명과 종목별 선수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종목별 선수단원은 감독 1명과 코치 2명 및 40명 이내의 선수로 구성한다.

제4조(직무) ① 단장은 스포츠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독은 선수의 발굴, 선발 및 지도, 경기운영 등의 책임을 진다.

③ 감독은 선수의 출결상황, 훈련내용, 특이사항 등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지도한다.

제5조(훈련장소) ① 스포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적체육공원야구장, 소래샛길인조잔디구장을 훈련장소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회개최나 유지보수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스포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① 스포츠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스포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 경기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074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부재 무단전출 수취인불명 소유자 미상 이사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0.10.22. ~ 2020.11.5.
3. 공고대상 : 21마7145외 12대
4. 공고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도 범칙금이 20~30만원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00~150만원이 부과됩니다.
   나.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법 제 88조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내역서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남동구)	수취인명	주 소	발송일자 (1,2차)	미배달사유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비고
1	2020-00292	21마7145	NEW 그랜저XG (NEW GRANDEUR XG)	남동구 풀무로 48 약사사 옆 주차장입구쪽 도로변	임*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길 *1, *동 **7호(만*동, 엑**트)	2020.9.3. 2020.9.23.	기타 기타	2020.7.31.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2	2020-00353	86어2452	이스타나-숏6밴	남동구 구월로 192 구월힐스테이트1단지 지하 2층 주차장 (다 11)	조*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로 *, **1호(만*동)	2020.9.15. 2020.10.8.	기타 배달	2020.9.10.	㈜서울폐차사업소	032-814-4400	
3	2020-00354	59나2809	에쿠스	남동구 구월로 192 구월힐스테이트1단지 지하 2층 주차장(가 36)	박*제	전라남도 화순군 사*면 대**길 *4-*	2020.9.15. 2020.10.8.	폐문부재 폐문부재	2020.9.9.	㈜서울폐차사업소	032-814-4400	
4	2020-00362	46저9571	스타렉스 9인오토(STAREX)	남동구 담방로 20 만수금호타운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	김*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로 2*-1*, **1동 ***4호(만*동, 금***트)	2020.9.4. 2020.9.22.	기타 수취인부재	2020.9.2.	기전산업㈜ 폐차사업소	032-814-4400	
5	2020-00365	37조8756	스포티지	남동구 석산로222번길 37 간석초교 앞	최*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길 *1-*1 *층 **2호(만*동)	2020.9.15. 2020.10.8.	기타 배달	2020.8.31.	㈜서울폐차사업소	032-814-4400	
6	2020-00370	33모8748	아반떼 쿠페 (AVANTE COUPE)	남동구 서창남순환로216번길 46 대로변	김*빈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로 1*, ***1호(십*동, 대***빌)	2020.9.4. 2020.9.22.	이사불명 이사불명	2020.8.26.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7	2020-00371	57노5501	스파크 1.0 DOHC	남동구 장수로 27 장수주공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	(주)팬***테***지	경기도 화성시 남*읍 주******길 2*	2020.9.15. 2020.10.8.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	2020.9.8.	㈜서울폐차사업소	032-814-4400	
8	2020-00377	49오8303	싼타페	남동구 인주대로522번길 49-8 앞	김*억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길 1*-*7, **1호(구*동)	2020.9.4. 2020.9.22.	배달 배달	2020.9.1.	기전산업㈜ 폐차사업소	032-814-4400	
9	2020-00382	36서6212	AUDI A6 2.4	남동구 경인로611 오피앙오피스텔 지하3층 주차장	정*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길 *4, *층(간*동)	2020.9.15. 2020.10.8.	기타 기타	2020.9.7.	㈜서울폐차사업소	032-814-4400	

10	2020-00386	61머9207	스파크 1.0 DOHC	남동구 석정로552번길 7 간석4파출소 주차장	㈜슈***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길 5*, *층(논*동, 광**딩)	2020.9.4. 2020.9.22.	이사불명 이사불명	2020.9.2.	기전산업㈜ 폐차사업소	032-814-4400	
11	2020-00398	서울85구2224	봉고프런티어	남동구 논현동 436-6 이노기술 주차장	장*택	경기도 광명시 철*동 7*번지 **0호 */8 서울특별시구로구천*동2*번지*호	2020.9.15. 2020.10.8.	이사불명 이사불명	2020.9.9.	기전산업㈜ 폐차사업소	032-814-4400	
12	2020-00399	96구8104	봉고Ⅲ 파워게이트	남동구 논현고잔로 208-1 논현꿈에그린6단지아파트 상가 주차장	박*수	경상북도 칠곡군 석*읍 북***길 *2, **1호	2020.9.15. 2020.10.8.	기타 기타	2020.9.9.	㈜인천폐차사업소	032-814-7077	
13	2020-00405	55저2249	아반떼(AVANTE)	남동구 운영동 88 근처 (운연천 둑방길)	맹*수	전라남도 나주시 그*로 **4, **4동 ***1호(빛**동, 빛*******아파트)	2020.9.23. 2020.10.8.	폐문부재 폐문부재	2020.9.17.	기전산업㈜ 폐차사업소	032-814-4400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0- 96호

2020년 음식점 입식좌석개선 지원 사업 모집 재공고

음식점 식탁문화개선을 위한「2020년 음식점 입식좌석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영업주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0월 10월 21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음식점 입식좌석개선 지원 사업

○ 사업 내용 : 기존 좌식 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 교체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모집공고시작일 기준 영업신고 기간 1년 이상)

○ 지원 규모 : 20개 업소 ▷ 업소당 60만원 이내 입식좌석개선 자금지원

* 교체 비용 75만원 미만: 구비 80%, 자부담 20%

* 교체 비용 75만원 이상: 구비 60만원, 나머지 자부담

○ 지원제외 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 사업자
-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
- 타 유사사업(주방환기시설개선, 주방문화개선, 키오스크도입 자금지원사업)에 지원받은 영업소

2 신청서류

신 청 서 류	비 고
1.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사업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사업장 내·외 모습 촬영사진 (2장) 4.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등) 5. 지방세 납세 증명원 6.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필수서류 중 미제출 자료 있을 시 선정 제외

3 선정방법

○ 선정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등)	➡	현장 실태조사(필요 시)	➡	업소 선정

○ 선정방법 : 공고 기한 내 신청서류 등 접수

⇒ 접수 순 서면평가(고득점 순)

○ 배점기준(최대 120점 취득가능)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일반	- 창업 5년 이상 존속	50	- 연 매출액 5천만 미만	50
	- 창업 3년 이상~5년 미만 존속	40	- 연 매출액 5천만 이상~1억 미만	40
	- 창업 2년 이상~3년 미만 존속	30	- 연 매출액 1억 이상~2억 미만	30
	- 창업 1년 이상~2년 미만 존속	20	- 연 매출액 2억 이상~3억 이하	20
가점	- '20년 현재 우수음식점(모범음식점,맛으로소문난집,외국인편리, 위생등급지정업소,안심식당)			20

※ 동점자의 경우 : 1순위) 연 매출액 낮은 영세업소, 2순위) 창업 존속기간 긴 업소

4 추진일정

1) 공고 및 신청 (10.21.(수)~ 10.27.(화))

○ 신청 : 개별 신청
○ 접수 :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방문접수

⇒

2) 지원 대상여부 통보 (10.30.(금))

○ 서류 확인
○ 현장 확인(필요 시)
○ 지원대상여부 확인 통보

⇒

3) 입식테이블 설치 및 현장 확인

○ 입식테이블 설치 비용 지급 (선정업소 → 업체)
○ 비용 청구 (선정업소 → 구)
○ 현장 확인(구)

⇒

4) 개선비용 지급(12월중)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비용 지급 (구 → 선정업소)

5 신청 및 문의

○ 신청기간 : 2020. 10. 21.(수) ~ 2020. 10. 27.(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전자우편(kmc0922@korea.kr), 직접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 제 출 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보건소), 우21589)

○ 지원 대상여부 확인 통보 : 2020. 10. 30.(금) 예정

* 유선 및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 신청서류 등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임1】

『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사업』

지원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제출자료 목록	확인란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사업장 내· 외 모습 촬영 사진 (2장)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5. 지방세 납세 증명서 (완납 증빙) (발급처 : 정부24(온라인 발급). 세무과 및 행정복지센터 등)	
6.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처 :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행정복지센터) ※ 발급용으로 제출	
7. 우수업소(모범음식점,맛으로소문난집,외국인편리 음식점,위생등급업소,안심식당)해당 여부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탈락으로 간주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은 음식점 영업주가 직접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해야 함)

업소명: 신청자 서명 : (인)

【붙임2】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사업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소현황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	
	업 종 (업소명)		영업의 형태	“한식, 중식, 경양식, 기타”기재	
	‘19년도 매출액		영업장 면적		
	가점항목	□ 우수음식점 여부 (모범음식점, 맛으로소문난집, 외국인편리 음식점, 위생등급업소,안심식당)			
지원요구	신청 내용	음식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비용 지원			
	신청 계획	좌식 ( )석 → 입식 ( ) 석			

위 본인은「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사업 」에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 참여하는데 동의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참여조건

: 사업 선정 시 입식테이블 설치 비용 75만원 미만 – 구비80%, 자부담 20%
75만원 이상 - 구비 60만원, 나머지 자부담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동구보건소장 귀하

【붙임3】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2020년 남동구 음식점 입식좌석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 이용범위 : 지원 사업 및 남동구(지자체) 운영과 관련된 부분한정

□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급 완료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인천 남동구보건소에서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보조금 지급 적정여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사업 종료 기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음식점 입식좌석개선 자금지원 사업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_____ (인)

남동구보건소장 귀중

공 고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0-97호

2020년 음식점 키오스크 도입 지원 사업 모집 재공고

포스트 코로나 비대면 시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2020년 음식점 키오스크도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영업주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남 동 구 보 건 소 장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음식점 키오스크 도입 지원 사업

○ 사업 내용 : 음식점 업소 내 키오스크(무인시스템)도입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모집공고시작일 기준 영업신고 기간 1년 이상)

○ 지원 규모 : 5개 업소 ▷ 업소당 60만원 이내 키오스크 설치 비용 지원

※ 설치 비용 75만원 미만 : 구비 80%, 자부담 20%

설치 비용 75만원 이상 : 구비60만원, 나머지 자부담

○ 지원제외 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 사업자
-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
- 타 유사사업(주방환기시설개선, 주방문화개선, 입식좌석개선 자금지원)에 지원받은 영업소

2 신청서류

신 청 서 류	비 고
1. 음식점 키오스크 도입 지원 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사업장 내·외 모습 촬영사진 (2장) 4.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등) 5. 지방세 납세 증명원 6.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필수서류 중 미제출 자료 있을 시 선정 제외

3 선정방법

○ 선정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서류심사 (지원신청서 등)	➡	현장 실태조사(필요 시)	➡	업소 선정

○ 선정방법 : 공고 기한 내 신청서류 등 접수

⇒ 접수 순 서면평가(고득점 순)

○ 배점기준(최대 120점 취득 가능)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배점
일반	- 창업 5년 이상 존속	50	- 연 매출액 5천만 미만	50
	- 창업 3년 이상~5년 미만 존속	40	- 연 매출액 5천만 이상~1억 미만	40
	- 창업 2년 이상~3년 미만 존속	30	- 연 매출액 1억 이상~2억 미만	30
	- 창업 1년 이상~2년 미만 존속	20	- 연 매출액 2억 이상~3억 이하	20
가점	- '20년 현재 우수음식점(모범음식점,맛으로소문난집,외국인편리, 위생등급지정업소,안심식당)			20

※ 동점자의 경우 : 1순위) 연 매출액 낮은 영세업소, 2순위) 창업 존속기간 긴 업소

4 추진일정

1) 공고 및 신청 (10.21.(수)~ 10.27.(화))	⇒	2) 지원 대상여부 통보 (10.30.(금))	⇒	3) 키오스크 설치 및 현장 확인
○ 신청 : 개별 신청 ○ 접수 :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방문접수		○ 서류 확인 ○ 현장 확인(필요 시) ○ 지원대상여부 확인 통보		○ 키오스크 설치 비용 지급 (선정업소 → 업체) ○ 비용 청구 (선정업소 → 구) ○ 현장 확인(구)

⇒	4) 비용 지급(12월중)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지원비용 지급 (구 → 선정업소)

5 신청 및 문의

○ 신청기간 : 2020. 10. 21.(수) ~ 2020. 10. 27.(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전자우편(kmc0922@korea.kr), 직접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 제 출 처 :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 (☎ 032)453-2623)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보건소), 우21589)

○ 지원 대상여부 확인 통보 : 2020. 10. 30.(금) 예정

* 유선 및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 신청서류 등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임1】

『 음식점 키오스크 도입 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제출자료 목록	확인란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사업장 내· 외 모습 촬영 사진 (2장)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5. 지방세 납세 증명서 (완납 증빙) (발급처 : 정부24(온라인 발급). 세무과 및 행정복지센터 등)	
6.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처 :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행정복지센터) ※ 발급용으로 제출	
7. 우수업소(모범음식점,맛으로소문난집,외국인편리 음식점,위생등급업소,안심식당)해당 여부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탈락으로 간주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은 음식점 영업주가 직접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해야 함)

업소명: 신청자 서명 : (인)

【붙임2】 음식점 키오스크 도입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소현황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	일반	
				휴대	
	업 종 (업소명)		영업의 형태	“한식, 중식, 경양식, 기타”기재	
	‘19년도 매출액		영업장 면적		
	가점항목	□ 우수음식점 여부 (모범음식점, 맛으로소문난집, 외국인편리 음식점, 위생등급업소,안심식당)			
지원요구	신청 내용	음식점 키오스크 설치 비용 지원			
	신청 계획	키오스크(무인 주문시스템) 설치			

위 본인은「음식점 키오스크 도입 지원 사업 」에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 참여하는데 동의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참여조건

: 사업 선정 시 키오스크 설치 비용 75만원 미만 – 구비80%, 자부담 20%
75만원 이상 - 구비 60만원, 나머지 자부담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동구보건소장 귀하

【붙임3】

『음식점 키오스크 도입 지원 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2020년 남동구 음식점 키오스크 도입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 이용범위 : 지원 사업 및 남동구(지자체) 운영과 관련된 부분한정

☐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보조금 지급 완료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인천 남동구보건소에서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고,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기간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보조금 지급 적정여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사업 종료 기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음식점 키오스크 도입 자금지원 사업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_____ (인)

남동구보건소장 귀중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16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372 (도림동) 외 2건
○ 변경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561 (남촌동)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 (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3-17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372 (도림동)	2009. 11.16.	지역명칭 인용	2020.10. 2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소래로 37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72를 건물번호로 부여	소래자전거도로 공중화장실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462	인천광역시 남동구 포구로 2-45 (논현동)	2009. 11.16.	인근에 소래포구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제명	2020.10. 2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포구로 2-4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45를 건물번호로 부여	소래포구 공중화장실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75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948번길 33 (논현동)	2009. 11.16.	앵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4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20.10. 20.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앵고개로948번길 3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3을 건물번호로 부여	소래4호광장 공중화장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변경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561 (남촌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563 (남촌동)	2009.11. 16.	남동구의 남북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논현동에 위치한 호구포 유적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20.10. 20.	민원요청으로 인한 건물번호 합병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563 (남촌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563 (남촌동)	2009.11. 16.	남동구의 남북을 통과하는 도로로써 논현동에 위치한 호구포 유적의 명칭을 반영하여 제명	2020.10. 20.	민원요청으로 인한 건물번호 합병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0-162호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195호(2008.9.22.)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9-190호(2019.12.2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된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남 동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41(간석동) 일원(간석동 900-138)
   나. 면적 : 32,366.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법인의 명칭 : 백운주택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 법인의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70-1번길 , 3층
   다. 대표자 성명 : 정낙인
   라. 대표자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7번길 20, 2동 503호 (간석동, 동국아파트)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20년 10월 2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별첨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	높이	용도
24,854.20㎡	18.26%	249.85%	지하3층 ~ 지상28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분	세대수	비고
39.96(39형)	40	임대주택(40세대)
59.97(59A형)	489	조합원 및 일반분양(706세대)
59.88(59B형)	135	
84.93(84형)	82	
계	746	

9.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시행자인 조합에 무상양도)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관리청에 무상귀속)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로	4,438.4㎡	도로	4,135.6㎡	백운주택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이 시행하여 관리청에 기부채납
주차장	892.4㎡	어린이공원	1,627.1㎡		
-	-	-	-		
-	-	-	-		
계	5,330.8㎡	계	5,762.7㎡		

10. 기타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032)453-8393)에 비치하고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끝.